『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5. 01.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08.29.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차 례>

Ⅰ. 통계작성 기획 ····· 1

Ⅱ. 통계설계 ····· 9

Ⅲ. 자료수집 ····· 23

Ⅳ. 통계처리 및 분석 ····· 34

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45

Ⅵ. 통계기반 및 개선 ····· 62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조사표개발, 표본설계 등),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건설경기동향조사(승인번호 : 제101016호)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조사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 통계조사관(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이하 조사담당자
- 또한 전화, e-mail, FAX 등의 방법과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CASI* 또는 통신매체포함)등으로 조사하고 있음
 * CASI: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ing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한 직접 입력)

2.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매월

○ 공표주기: 매월

3.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조사기획

▷ 건설경기동향조사 기획(매월)
- 질의내용 검토 및 회신
- 프로그램 개선
- 조사지침서 작성 및 보완(매년 상반기)
- 조사표 및 결과표 개선(연중)

↓

기업체 선정 및 관리

▷ 표본선정(매년11월~익년 1월)
- 건설업조사(모집단)의 결과 검토
- 확정된 모집단에 의한 표본설계
- 현지실사 후 표본 확정

▷ 표본관리(매월)
- 휴업, 폐업, 합병에 따른 관리(조사 중지)
- 지역간 이전에 따른 관리(관할 사무소 변경)

↓

현지조사

▷ 확정된 표본기업체 현지조사(매월)
- 건설수주(1~18일), 건설기성(1~22일)
- 업체별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 파악
- 발주자별 공종별 분류 및 부호 기입
- 작성된 조사표 회수 및 조사내용 검토

↓

자료입력

▷ 조사 기업체의 자료입력 마감(매월)
- 건설수주(18일 마감), 건설기성(22일 마감)
- 각 사무소별로 조사자료 입력 마감
- 인터넷(CASI) 조사 병행
- 전산내검 및 자료보완

↓

결과분석

▷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동향 결과분석(매월)
- 건설수주(19~21일), 건설기성(23~24일)
- 공종별, 발주자별 수주액 및 기성액
- 건설수주 및 기성 계절조정계열 작성
- 대규모 공사액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보고서 작성

▷ 건설경기동향 보도자료 작성 공표(매월)
- 건설경기동향월보 발간 배부(익월 1~10일)

▷ 연간보정(매년 1~2월)
- 건설경기동향 연간집계시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른 보정

4. 통계연혁

□ 건설수주 연혁

○ 1975. 1월분 ~ 1976. 6월분까지 시험조사
○ 1976. 7월 26일 작성승인 (1976. 1월분부터 자료공표)
○ 1976. 7월분부터 본조사 (도급 기성순위 상위 170개 업체)
○ 1991. 1월분부터 기성순위 상위 200개 업체 (대표도 약 55% 내외)
○ 1995. 1월분부터 대표도 54%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2005. 8월 공종분류 세분화 (주택 →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주택)
○ 2008. 2월 건설수주통계조사를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통합
○ 2008. 10월 건설경기통계조사를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09. 1월 조사항목 정비(계약금액, 발주자공급원자재비, 도급구분 항목 조사중지),
발주자분류 통합(외국기업체를 민간으로 통합),
공종분류 분리(토지조성 및 공원 → 토지조성, 조경공사)
○ 2009. 2월 공표항목 추가(계절조정계열)
○ 2010. 2월 공종분류 조정(건축, 토목, 전문공사 → 건축, 토목)
○ 2013. 6월 공표항목 추가(공사지역(시·도)별 건설수주동향)

□ 건설기성 연혁

○ 1997. 8월 ~ 1998. 2월까지 시험조사
○ 1998. 2월 3일 작성승인 (1997. 7월분부터 자료공표)
○ 1998. 1월분부터 본조사 (대표도 50%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2008. 2월 건설기성통계조사를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통합
○ 2008. 10월 건설경기통계조사를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09. 1월 조사항목 정비(당월공사현장수 항목 조사중지)
○ 2009. 2월 공표항목 추가(계절조정계열)
○ 2010. 2월 공종분류 조정(건축, 토목, 기타 → 건축, 토목)
○ 2010. 3월 공표항목 추가(불변, 불변계절조정)
○ 2013. 2월 건설기성디플레이터 기준년 변경(2005년 기준→2010년 기준)
○ 2020. 2월 건설기성디플레이터 기준년 변경(2010년 기준→2015년 기준)
○ 2025. 2월 건설기성디플레이터 기준년 변경(2015년 기준→2020년 기준)

□ 건설기성 개발배경

○ 국내 건설투자 동향은 정부의 경기동향 파악과 향후전망, 건설업체의 시황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설투자에 관한 통계는 건설투자 동향을 파악하는데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음

- 건설수주통계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매월 대규모 건설업체의 수주동향을 집계하여 공표하는 지표이나, 당기의 건설동향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고 건설투자에 대한 선행지표로 실

제 투자와는 시차가 있음

- 건축허가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실적을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집계하여 공표하는 지표이나, 건설투자에 대한 선행지표로 실제 투자와는 시차가 있으며, 토목부문은 제외되고 건축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건설업 동향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함
-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GDP 공표시 건설투자 추계치를 매 분기 말월보다 2개월 후에 공표하고 있어 시의적으로 속보성이 결여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매월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건설기성액을 조사하여 건설투자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건설업체 등 일반 이용자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 것임

□ 통계 변경 및 개편 이력

○ 표본 변경

- 매년 최신 모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설계를 실시(절사추출법으로 표본이 추출됨에 따라 주로 하위업체에서 표본변동 발생)
- 표본규모는 표본기업체수를 고정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대표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년 표본기업체수가 변동됨(수주 1995. 1월분부터, 기성 1998. 1월분부터)

○ 분류 변경

- 건설수주 발주자분류
 · (2009. 1월, 통합) 외국기업체를 민간으로 통합
- 건설수주 공종분류
 · (2005. 8월, 세분) 주택 →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주택
 · (2009. 1월, 세분) 토지조성 및 공원 → 토지조성, 조경공사
 · (2010. 2월, 조정) 건축, 토목, 전문공사 → 건축, 토목
- 건설기성 공종분류
 · (2010. 2월, 조정) 건축, 토목, 전문공사 → 건축, 토목

○ 건설기성디플레이터 변경

- (2010. 3월) 2005년 기준으로 개발
- (2013. 2월) 2010년 기준으로 변경
- (2020. 2월) 2015년 기준으로 변경
- (2025. 2월) 2020년 기준으로 변경

5.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목적

○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 활동의 단기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 주된 활용분야

○ 건설수주 조사결과 :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 부문의 생산활동, 고용 및 건설자재 수급 등 건설경기 동향 파악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자료: 국내건설경기동향조사(대한건설협회), 경기선행지수(국가데이터처) 등
- 분석자료: 기획재정부 등 공공부문 및 언론, 연구소, 증권회사 등

○ 건설기성 조사결과 : 설비투자지수와 함께 국내 투자부문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련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

- 기초자료: 국민계정 건설투자지표(한국은행), 경기동행지수(국가데이터처), 전산업생산지수(국가데이터처)
- 분석자료: 기획재정부 등 공공부문 및 언론, 연구소, 증권회사 등 (수정본에 삽입)

□ 주요 기관별 통계활용 현황

○ 대한건설협회: 건설수주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건설경기동향조사 공표

○ 한국은행: 건설기성액을 활용하여 국민계정 건설투자지표 산출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전산업생산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언론, 연구소, 증권회사: 국내경기동향 분석자료

□ 건설기성·건설투자·GDP건설투자 · GDP 건설업 비교

	국가데이터처 건설수주액(월별)	국가데이터처 건설기성액(월별)	국민계정 건설투자(분기)	국민계정 건설업(분기)
작성목적	국내 건설경기 **동향을 조기**에 파악	국내 건설활동의 단기 투자동향 파악(대규모 업체 동향 위주)	향후 생산활동을 높이기 위한 건설 **고정자산의 투자**동향 파악	건설업에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 포착(생산측면)
추계방법	조사대상(대표도 54%) 기업체의 국내수주액 집계	조사대상(대표도 50%) 기업체의 국내공사 기성액(하도급 제외) 집계	건설업 산출액(건축보수 등 제외) + 영림(육성자산) + 부대비용(취·등록세, 소유권 이전비용 등) + 재고증감	산출액 – 중간투입
기초자료	국내 종합건설업체 (대표도 54%)	국내 종합 건설업체 (대표도 50%)	건설업조사(건설경기동향), 국토해양부 착공실적, 부동산 거래현황, 산업연관표 등	건설업조사(건설경기동향), 국토해양부 착공실적, 정부세출자료, 산업연관표 등
공표주기	월	월	분기	분기

공표계열	1976년 1월 이후 경상(원계열, SA)	1997년 7월 이후 경상(원계열, SA) 불변(원계열, SA)	1970년 1/4분기 이후 경상(원계열, SA) 불변(원계열, SA)	1970년 1/4분기 이후 경상(원계열, SA) 불변(원계열, SA)
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비고	중소 건설업체 흐름이 미반영 가능성이 있음	중소 건설업체 흐름이 미반영 가능성이 있음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3개의 분류 공표함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보수, 토목 4개의 분류 공표

□ 기타 유사통계 작성 현황

	건축허가·착공면적	건설경기실사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목적	향후 건축부문 공사 동향을 조기에 파악	건설산업에 대한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	건설공사 공사비 변동 파악 (물가 및 시장동향)
추계방법	구시군 → 시도→ 국토교통부 (행정통계)	종합건설업체 대상 조사	IOT투입구조 및 PPI 변동을 가중평균
기초자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착공대상	패널업체 조사(매출액에 따라 구분)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주기	월	월	월
공표계열	1962년 1월 이후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작성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비고			

6. 유형별 주요 이용자 관리

□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대한건설협회: 건설수주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건설경기동향조사 공표

○ 한국은행: 건설기성액을 활용하여 국민계정 건설투자지표 산출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전산업생산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언론, 연구소, 증권회사: 국내경기동향 분석자료

□ 주요 이용자 관리 여부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가데이터처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관리하고 있음

7. 이용자 의견수렴

○ 일시: 2023. 11. 9.(목)
○ 참석자: 9명
- 산업동향과장, 설비·건설투자 담당사무관, 업무담당자
- 경제통계기획과·소득통계과 담당사무관

○ 주요안건
-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17개 시도별 투자지표 작성방안 관련 의견수렴

□ 투자부문 지역별 통계작성 방안 관련 의견수렴 결과

○ 건설기성조사는 건설수주조사와는 달리 발주자 및 공종별 기성액을 조사하여 지역별 자료 부존재

○ 건설협회를 통한 분기별·지역별 기성액 자료 확보 가능여부 검토, 분기별 자료는 없을 가능성 있음

○ 건설기성조사를 기업별 공사건별 기성액 조사하는 방법[연간조사표 유사]과 기존 항목 외 지역별 항목 추가하여 조사하는 방법 비교 필요

☞ 지방청 협의 및 시험조사 등 필요, 금액조사 외 비중조사 고려

○ 건설기성 금액조사 어렵다면 공사건별 진척률조사 후 배분 고려

○ 건설기성조사 지역별 통계 생산을 위해 표본 확대 및 추출 시 대상업체 지역별 배분 필요

○ 일시: 2024. 6. 12.(수)
○ 참석자: 8명
- 국가데이터처 2명(산업동향과 건설경기동향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6명

○ 주요안건
- 건설경기동향조사(주택수주 등) 와 대한건설협회 수주자료와의 차이에 대한 조사집계 등 자료이용에 대한 업무협의

□ 건설경기동향조사 관련 대한건설협회와의 업무협의 결과

ㅇ 국가데이터처 요구사항
- ‘24.1분기 대한건설협회 자료와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주택수주 등)차이에 대한 설명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자료 보정 요구

* 국가데이터처 건설수주조사 자료는 2개월까지는 잠정(자료집계지연 등)이며, 3개월째에 수주자료가 확정되는 사항과, 대표도 보완 등 연간보정(2개년 자료)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됨을 설명

ㅇ 대한건설협회 의견

- 자체 보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 향후, 상기 내용 준수하여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이용하겠음

□ 건설경기동향조사 이용자 요구사항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통계 작성 요구 증가

○ 투자부문 지역경제동향 통계 생산 미흡

- 건설기성 및 설비투자 관련 지역별 통계작성 방안 검토

□ 지역별 통계작성 방안 검토할 정원 확보

○ 지역별 통계작성 방안 검토할 정원 확보(5급 1명, 6급 1명)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시행일: ’25.2.25.(화)

□ 대한건설협회 수주동향조사 통계수치 보정계획(안) 제출(’24.7.8.)

○ 2020년 이후 건설수주액 분석 수치 보정 실시

- 보고서 및 건설수주액 분석자료에 국가데이터처의 건설경기동향조사 보정에 따라 통계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국가데이터처(산업동향과)에 보정계획을 알리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통계수치 수정 통보

Ⅱ. 통계설계

1. 조사항목

□ 조사항목체계

○ 건설수주

- 공사명, 공종세분류명, 공사지역,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수주액, 착공예정연월, 완공예정연월 등 8건으로 구성

○ 건설기성

- 발주자별 기성액, 공사종류별 기성액 및 합계로 구성
 · 발주자별 기성액 : 공공, 민간(직영공사, 도급공사), 민자, 외국기관 및 합계로 구성
 · 공사종류별 기성액 : 건축(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일반토목, 전기기계, 플랜트, 조경공사) 및 합계로 구성

□ 주요 항목의 조사목적

○ 건설수주

- 공사명: 공사내용 파악 및 공종분류를 위한 정보 파악
- 공종세분류명: 공종세분류를 위한 정보 파악
- 공사지역: 시도별 공표를 위한 정보 파악
-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 및 공종세분류를 위한 정보 파악
- 수주액: 주 공표항목
- 착공예정연월, 완공예정연월: 수주액에 대한 내검, 수주자료와 기성자료간의 비교·분석 및 향후 건설투자규모 예측에 활용

○ 건설기성

- 기성액: 주 공표항목
- 발주자분류 및 공종분류: 증감사유 파악 및 공표범위로 이용

□ 주요 항목별 정의

○ 수주액

-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과 직영공사 총공사비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 기성액

-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 공사의 완공여부나 공사대금의 청구·수취 여부와는 무관함
 · 직영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비발생액을 조사함

○ 건축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토목

-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 직영공사

- 건설업체가 임대, 증여, 분양 또는 직접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력 및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자기계정으로 시공하는 공사
 ·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경우는 도급공사로 분류

○ 도급공사

- 시공사(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시행사(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공사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

○ 기업체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조사단위는 기업체임

○ 재건축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재개발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역 및 그 밖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등

□ 주요 용어별 정의

○ 발주자공급원자재비

- 발주자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따라 공급하는 자재의 비용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수주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여 조사함

○ 하도급

-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하도급받은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도급계약(컨소시엄)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둘 이상의 업체가 결성한 조직)와 체결하는 계약

· 유형: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지분율만큼만 조사함

○ 계속비공사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중에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계약방식의 공사 (총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경우임)

· 건설수주는 총액을 수주액으로 조사함

○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중에서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는 계약방식의 공사 (총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 매년 1년치 예산을 확보하면서 연차계약 진행)
- 건설수주는 총공사금액을 수주액으로 조사함(연차계약에서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으로 조사하지 않음)

□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기업체”

조사명	정의/개념
국가데이터처 건설업조사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집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임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 “기성액”

조사명	정의/개념
국가데이터처 건설업조사	▫ 건설업체에서 공사의 완공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 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말함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 공사의 완공여부나 공사대금의 청구·수취 여부와는 무관함

○ “수주액”

조사명	정의/개념
국가데이터처 건설업조사	▫ 조사대상 업체가 발주자와 조사기준년도에 체결한 공사 계약액과 자기 공사의 합계액을 말함
대한건설협회 건설수주동향조사	▫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계약통계	▫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도급계약액 - 직영공사는 제외하고, 당해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고 자재공급액은 제외함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과 직영공사 총공사비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2. 적용 분류체계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에 한정되며 해외 건설공사는 제외함

□ 공종 분류 체계

○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공종세분류

대분류	건설수주 공종세분류		건설기성 공종세분류	
건축		주택	101	주거용
	111	· 신규주택		
	121	· 재건축		
	131	· 재개발		
	102	사무실, 점포, 오락·숙박시설	102	비주거용
	103	공장·창고		
	104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109	기타건축		
토목	201	치산·치수	201	일반토목
	202	농림·수산		
	203	도로·교량		
	204	항만·공항		
	205	철도·궤도		
	206	상·하수도		
	207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	202	전기기계
	208	토지조성		일반토목
	209	댐		
	210	기계설치	203	플랜트
	211	조경공사	204	조경공사
	219	기타		일반토목

○ 토목 공종분류 비교

- 건설산업기본법의 '산업환경설비'를 건설기성에서는 '전기기계'와 '플랜트'로 분류함

건설기성	건설산업기본법	
201 일반토목	토목	
202 전기기계	산업환경설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203 플랜트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204 조경공사	조경	

□ 발주자 분류 체계

○ 건설수주 발주자세분류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 공공		○ 민간	3000	○ 국내외국기관
1010	- 정부		- 제조업		
1020	- 지방자치단체	2110	·음식료품 제조업	2**1	○ 민자유치사업
1030	- 공기업	2120	·섬유·의류 제조업		- 민간의 발주자분류
1090	- 기타공공단체	2130	·석유·화학 제조업		코드 네 번째에 '0' 대
		2140	·1차 금속 제조업		신 '1'로 구분
		2150	·기계 · 장치 제조업		
		2190	·기타 제조업		* 외국기업체는
			- 비제조업		민간으로 분류
		2210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20	·도소매,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22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50	·건설업		
		2290	·기타 비제조업		

○ 건설기성 발주자세분류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101	○ 공공		○ 민간		○ 민자
		201	- 직영공사	401	○ 외국기관
		202	- 도급공사		* 외국기업체는
		20*	· 외국기업체		'민간'으로 분류
			민간으로 분류		됨에 유의

□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 적용 여부 :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분류를 적용

- 민간부문 발주자세분류와 국내 타 기준과의 관계

발주자세분류			표준산업분류(10차)	건설산업기본법 공종분류
민간 제조업	2110	음식료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950 음식료품
	2120	섬유·의류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51 섬유류
	2130	석유·화학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54 화학
	2140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956 제1차금속(철강업)

	2150	기계·장치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57 조립금속(기계)
	2190	기타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2 나무제품·가구 953 종이제품·인쇄 955 비금속광물 958 기타제조업
민간 비제조업	2210	운수·창고 및 통신업	[H49~H52] 운수 및 창고업 [J61] 우편 및 통신업	964 운수,창고,통신
	2220	도소매,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	[E37~E39]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G45~G47] 도매 및 소매업 [I55~I56] 숙박 및 음식점업 [J58~J60, J62~J63] 정보통신업 [K64~K66] 금융 및 보험업 [M70~M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4~N75]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Q86~Q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90~R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94~S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3 도·소매,음식,숙박 965 금융,보험 967 사업, 서비스업 968 사회및개인서비스업
	22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68] 부동산업 [N76] 임대업	
	2250	건설업	[F41~F42] 건설업	966 건설업(분양임대는 부동산업)
	2290	기타 비제조업	[A01~A03] 농업, 임업 및 어업 [B05~B08] 광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36] 수도업 [산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류]	960 농림·수산 961 광업 962 전기·가스·수도

3. 조사표 설계 및 구성

3-1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

□ 조사항목 변경내용 설계 및 변경절차

►조사항목 변경 관련 이용자 의견 수렴 ►자체 내부 검토	➡	►내·외부 전문가회의 ►관계부처 협의 ►내부 변경계획 수립	➡ ►조사항목 설계·확정	➡ ►조사항목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변경승인) 완료 * 변경승인 협의: 경제통계심사조정과

3-2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 **회의개요**

1.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1.14.(목) 13:30~15:30, 정부대전청사 14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6명
 - 산업동향과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2.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3.4.(금) 14:00~16:30, 국가데이터처 16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6명
 - 산업동향과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3.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6.4.(금) 14:00~16:30, 통계개발원 6층 FGI룸
 ㅇ (참석자) 8명
 - 산업동향과장,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내용 확인(변경 내용 포함)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방향 논의 등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관련 조사원 면접결과 공유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관련 향후 일정 논의 등

3-3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 **검토배경 및 추진현황**

ㅇ (검토배경) 사업체 비대면조사 전환으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필요
 - 응답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 개선

ㅇ (추진현황) '21년 통계개발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조사원과 사업체 인지 면접을 통해 조사표 개선사항 발굴

□ **조사표 개선사항**

ㅇ (건설수주) 건설수주 조사표 종류(2종→1종)를 줄이고, 응답자 미작성 항목 삭제 및 조사표 유의 사항을 보완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ㅇ (건설기성) 응답자가 미작성 항목 삭제하고, 조사표 유의 사항을 보완

연구결과		반영결과	
구분	제언	반영여부	반영사항
수주, 기성	·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조사항목 번호와 유의사항 번호를 일치시켜 항목별로 참고하기 쉽도록 제시	미반영	· 사유: 조사항목(8개) 번호를 넣지 않아도 구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수주	· 갑 표의 '번호'를 연장해서 을 표로 연결, '이하 추가하여 작성' 등 지시 · 갑 표를 1페이지, 을 표를 2페이지로 표현 변경	반영	· 수주 조사표 통합 · '갑', '을' 표현 삭제
수주	· 조사표에 기입해야 할 '공사명'에 대한 지시 필요 <예> 조사기준월 간 체결완료된 공사계약의 건명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직영공사 옆에 대체용어인 '자기공사'를 병기하여 공사명에서 누락 방지	기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포함
수주	· 착공이 시작된 공사의 재수주 계약은 '공사명' 작성 대상이 아님 명시	미반영	· 재수주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반영

연구결과		반영결과	
구분	제언	반영여부	반영사항
수주	·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계약 포함' 명시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공사기간의 변경 계약을 '공사명' 응답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결정 필요 · 응답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시문 배치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기성	· 하도급공사는 포함되지 않음을 지시 사항에 명시	기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포함
수주	· '공사명'은 수주액 규모에 관계없이 기입하도록 지시문 배치 필요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경우의 사례 제시하여 계약시점 착오 방지 <예> 응찰 중, 설계작성 중, 계약 체결 전 일부 착공시점, 낙찰시점 등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공사지역'이 두 지역 이상으로 걸쳐지는 경우 선택기준 제시	미반영	·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반영
수주	· 발주자분류의 원칙에 대한 설명 제공 <예> '국내 공공'은 관련법에 따라, '국내 민간'은 주된 사업에 따라, 개인의 경우 해당 해당 공사의 목적에 따라	미반영	· 조사표에 발주자 세분류명 및 부호가 있으므로 미반영
수주	· '수주액'은 '공동도급 계약은 응답 기업체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기입' 내용을 추가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지시문에 '기존 공사 중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발생한 경우 변동분만을 계산하여 기입할 것'을 명시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수주	·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비(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가 있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주액에 포함	기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포함
기성	· 조사표의 유의사항의 '기성실적'을 '기성액'으로 조사표상의 용어와 일치 ·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라는 문구의 주체('누가 평가한 금액인가')를 제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 · 기성액 파악의 목적을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제시 · 공사현장관리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값임을 암시하는 용어 사용 <예> '공정률'에 기반한 기성액 등	반영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추가
기성	· 공사현장별 기성액을 각 분류별로 합친 후에 '반올림' 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한 착오를 방지	미반영	· 기성액 조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3-4 조사표 첨부

□ 건설수주

승인번호 제 101016 호

(20□□년 □□월분) 건설경기동향조사표(건설수주)

이 조사는 국내 건설활동동향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제101016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기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업 체 명		기 업 체 고 유 번 호
소재지(주소)		- -

일련번호	공 사 명	공종세분류명 *분 류 부 호	공사지역 *지역부호	발 주 자 명	발주자세분류명 *분 류 부 호	수 주 액 (백만원)	착공 예정 년	월	완공 예정 년	월
1							년		년	
							월		월	
2							년		년	
							월		월	
3							년		년	
							월		월	

[공종 세분류명 및 부호]

건 축	토 목	
101 주택	201 치산・치수	208 토지조성
111 신규주택	202 농림・수산	209 댐
121 재건축주택	203 도로・교량	210 기계설치
131 재개발주택	204 항만・공항	211 조경공사
102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205 철도・궤도	219 기타토목
103 공장・창고	206 상・하수도	
104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207 발전・송전, 옥외 전기・통신	
109 기타건축		

공사 지역 및 부호

서울: 11	광주: 24	경기: 31	전북: 35
부산: 21	대전: 25	강원: 32	전남: 36
대구: 22	울산: 26	충북: 33	경북: 37
인천: 23	세종: 29	충남: 34	경남: 38
			제주: 39

[발주자 세분류명 및 부호]

국내 공공	국내 민간		국내 외국기관	민 자
1010 정부	210 제조업	220 비제조업	3000 국내외국기관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	민간 기업이 민자유치 사업을 발주하였을 경우 사업의 용도 (운수,교육 등)에 따른 민간발주자 분류부호 뒤에 "1" 을 추가 예)도로,철도,항만 : 운수업 (221)_(1) = 2211
1020 지방자치단체	2110 음식료품	2210 운수・창고・통신업		
1030 공기업	2120 섬유・의류	2220 도소매・금융・교육・사업서비스업		
1090 기타공공단체	2130 석유・화학	2230 부동산・임대업		
	2140 1차금속	2250 건설업		
	2150 기계・장치	2290 기타비제조업		
	2190 기타제조업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 -	() -
・F A X	() -	() -
・E-mail		

* 음영부분은 통계청에서 작성합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일련번호	공 사 명	공종세분류명 *분 류 부 호	공사지역 *지역부호	발 주 자 명	발주자세분류명 *분 류 부 호	수 주 액 (백만원)	착공 예정 년	월	완공 예정 년	월
4							년		년	
							월		월	
5							년		년	
							월		월	
6							년		년	
							월		월	
7							년		년	
							월		월	
8							년		년	
							월		월	
9							년		년	
							월		월	
10							년		년	
							월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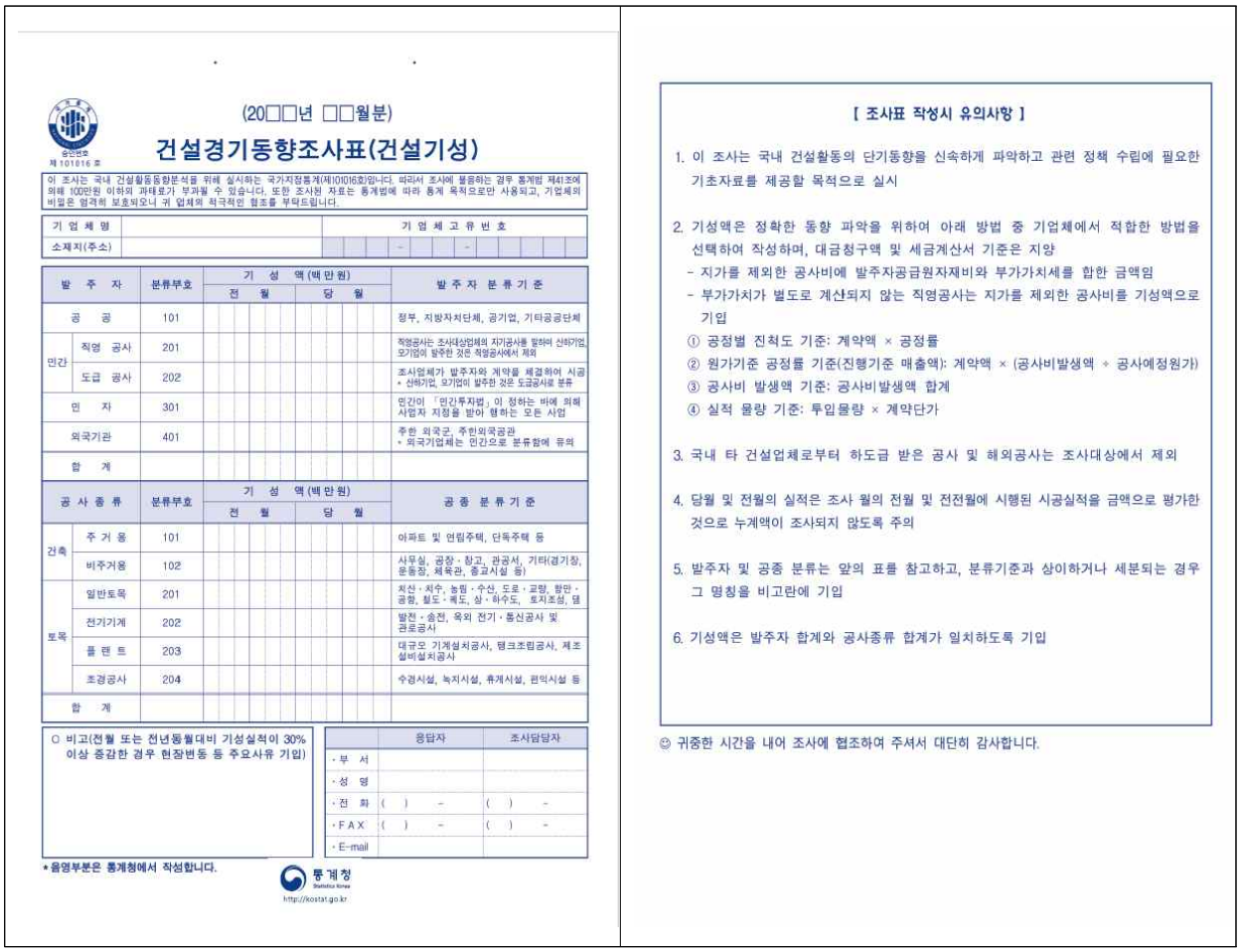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조사 대상은 기업체가 조사월에 체결한 모든 공사계약(변경계약 포함)이며,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 해외 건설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수주시점은 계약체결시점 기준으로 조사하며, 응찰 및 낙찰, 설계 작성, 계약체결 전 착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은 계약체결이 아님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공사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명 앞에 '증액' 또는 '감액'을 표시하고, 변동분만 기입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공사기간에 있는 경우 공사명 앞에 '기간변경'을 표시
2. 공사명은 계약서의 공사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종 세분류명 및 발주자 세분류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고하여 분류하며, 공사지역은 17개 시, 도를 기재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하여 발주한 공사는 원 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재
3. 수주액은 발주자와 기업체가 체결한 총 공사계약액임(부가가치세 포함, 토지구입비 및 보상비 제외)
 -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비가 있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주액에 포함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기업체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기입
4. 직영공사(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자기공사)는 수주액에 공사계획 확정시 예정 총 공사비를 기재(그 공사에 소요되는 지가(地價)는 제외)하되, 계약 확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시의 예정 공사비를 기재
5. 국가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을 "×× 공사"로, 발주자명을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동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주한미군일 경우)으로 기재
6. 수주건이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조사표를 이용하여 이어서 작성

○ 비고(주요 참고사항 등 기재)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설기성



(20□□년 □□월분)

건설경기동향조사표(건설기성)

승인번호 제101016 호

이 조사는 국내 건설활동동향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제101016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기업체의 비밀은 법적히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업 체 명		기 업 체 고 유 번 호
소재지(주소)		- -

발 주 자		분류부호	기 성 액(백만원) 전 월	기 성 액(백만원) 당 월	발 주 자 분 류 기 준
공 공		10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공공단체
민간	직영 공사	201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업체의 자기공사를 말하며 산하기업, 모기업이 발주한 것은 직영공사에서 제외
민간	도급 공사	202			조사업체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 산하기업, 모기업이 발주한 것은 도급공사로 분류
민 자		301			민간이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업자 지정을 받아 행하는 모든 사업
외국기관		401			주한 외국군, 주한외국공관 • 외국기업체는 민간으로 분류함에 유의
합 계					

공 사 종 류		분류부호	기 성 액(백만원) 전 월	기 성 액(백만원) 당 월	공 종 분 류 기 준
건축	주 거 용	101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	비주거용	102			사무실, 공장 · 창고, 관공서, 기타(경기장, 운동장, 체육관, 종교시설 등)
토목	일반토목	201			치산 · 치수, 농림 · 수산, 도로 · 교량, 항만 · 공항, 철도 · 궤도, 상 · 하수도, 토지조성, 댐
토목	전기기계	202			발전 · 송전, 옥외 전기 · 통신공사 및 궤도공사
토목	플 랜 트	203			대규모 기계설치공사, 탱크조립공사, 제조설비설치공사
토목	조경공사	204			수경시설, 녹지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
합 계					

○ 비고(전월 또는 전년동월대비 기성실적이 30% 이상 증감한 경우 현장변동 등 주요사유 기입)

	응답자	조사담당자
· 부 서		
· 성 명		
· 전 화	() -	() -
· FAX	() -	() -
· E-mail		

*음영부분은 통계청에서 작성합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이 조사는 국내 건설활동의 단기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

2. 기성액은 정확한 동향 파악을 위하여 아래 방법 중 기업체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대금청구액 및 세금계산서 기준은 지양
 - 지가를 제외한 공사비에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부가가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 직영공사는 지가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성액으로 기입
 ① 공정별 진척도 기준: 계약액 × 공정률
 ② 원가기준 공정률 기준(진행기준 매출액): 계약액 × (공사비발생액 ÷ 공사예정원가)
 ③ 공사비 발생액 기준: 공사비발생액 합계
 ④ 실적 물량 기준: 투입물량 × 계약단가

3.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및 해외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4. 당월 및 전월의 실적은 조사 월의 전월 및 전전월에 시행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누계액이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5. 발주자 및 공종 분류는 앞의 표를 참고하고, 분류기준과 상이하거나 세분되는 경우 그 명칭을 비고란에 기입

6. 기성액은 발주자 합계와 공사종류 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입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5 첨부된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국가통계승인 마크 및 승인번호
○ 조사명
○ 조사 목적
○ 조사 법적근거
○ 조사문항별 주요 용어, 개념 설명 등 응답자를 위한 해설
○ 응답자 협조요청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사인사
○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호정책
○ 조사기관명

3-6 응답 유형별 응답 소요시간

□ 대상처당 면접조사 소요시간은 36.7분

○ 자료출처: 지방통계청 업무량 측정 컨설팅 결과보고서(2020.11월)

대상처당 면접조사 소요시간(분)						
계	조사 준비	이동 (대기포함)	기입 지도	면접 조사	조사표 정리	입력및 전산내검
109.0	12.5	18.4	0.0	36.7	23.7	18.1

- 조사별 대상처당 면접조사 소요시간은 '조사준비-이동(대기시간 포함)-기입지도-면접조사-조사표정리-입력 및 전산내검'을 1일에 완료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간임

4.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조사표 구성 관련 내 · 외부 전문가 회의

○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 회의개요

1.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1.14.(목) 13:30~15:30, 정부대전청사 14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6명
 - 산업동향과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2.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3.4.(금) 14:00~16:30, 국가데이터처 16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6명
 - 산업동향과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3.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관련 업무협의 결과
 ㅇ (일시/장소) 2021.6.4.(금) 14:00~16:30, 통계개발원 6층 FGI룸
 ㅇ (참석자) 8명
 - 산업동향과장, 건설경기동향 담당자, 통계방법연구실 연구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내용 확인(변경 내용 포함)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방향 논의 등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관련 조사원 면접결과 공유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개선관련 향후 일정 논의 등

○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결과

□ 검토배경 및 추진현황

ㅇ (검토배경) 사업체 비대면조사 전환으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필요
- 응답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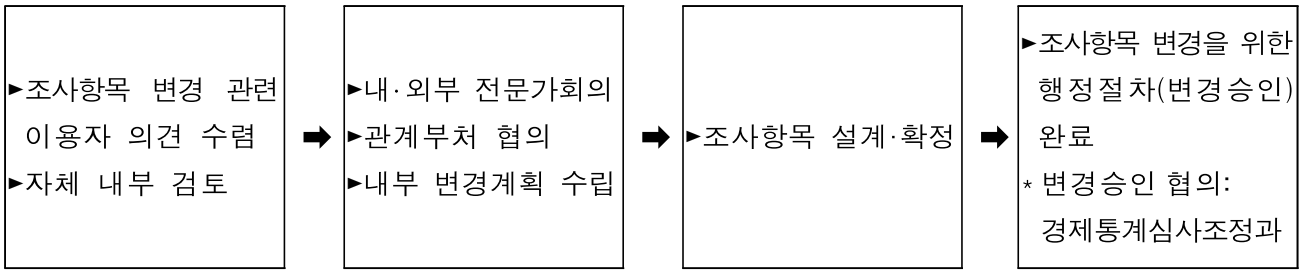
ㅇ (추진현황) '21년 통계개발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조사원과 사업체 인지 면접을 통해 조사표 개선사항 발굴

□ 조사표 개선사항

ㅇ (건설수주) 건설수주 조사표 종류(2종→1종)를 줄이고, 응답자 미작성 항목 삭제 및 조사표 유의 사항을 보완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ㅇ (건설기성) 응답자가 미작성 항목 삭제하고, 조사표 유의 사항을 보완

□ 조사항목 변경내용 설계 및 변경절차



□ 조사표 변경 이유 기록·관리

○ 응답자 미작성 항목 삭제 및 유사한 항목을 통합

* 조사담당자가 입력하는 「조사방법」과 「잠·확정 구분」삭제

○ 건설수주 조사표 사업체 비대면조사 전환으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필요. 이에 따라 응답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개선

○ 21년 통계개발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조사표 개선사항을 발굴했으며, 발굴된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반영

* 공사수주건에 따라 갑·을 조사표 2종에서 1종으로 통합

○ 비대면조사팀 신설로 인하여 비대면조사팀을 통한 작성체계 추가

조사대상업체→지방청(사무소)→ 국가데이터처	→	조사대상업체→지방청(사무소)→ 국가데이터처 조사대상업체→ 비대면조사팀→ 국가데이터처

□ 변경승인일자 기록·관리

○ 2022-07-04 변경승인(원안승인)

- 조정사항 : 작성사항, 작성체계, 국제통계 준수여부

5.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최근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중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 조사모집단: 최근년 건설업조사 결과의 종합건설업체

○ 각종 건설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당해 연도에 건설활동을 수행한 기업체가 건설업조사 조사대상이므로 목표모집단과의 차이가 거의 없음

- 단,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는 제외됨

6.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통계명: 건설업조사(종합건설업체 명부)

○ 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

○ 작성년도: 최근년도 조사결과(Y-2년)

□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건설업조사 결과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국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 조사단위가 추출단위와 동일한 기업체이며,
- 표본설계에 필요한 기성액 및 공사지역 항목을 포함하며,
-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됨

□ 표본추출틀의 구축(갱신) 주기, 방법 및 절차, 결과 등

○ 기초자료: 건설업조사 조사 결과

○ 표본추출단위: 기업체

○ 내용: 총기성액(시도별 및 공종별), 계약액, 명부사항, 최근 3년간 표본여부 등

○ 주기: 1년

○ 구축과정

-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의 모집단명부와 공사실적 입수(매년 11~12월경)
- 기존 명부와 기업체번호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일치 작업
- 본사소재지를 이용한 관할 사무소 매칭, 최근 3년간 표본여부 및 관할 사무소 매칭
- 기업체별×공사지역별 및 기업체별×공종분류별 실적을 교차표로 작성
- 수주 및 기성 표본여부에 따라, 전체 및 시도별 누적대표도가 집계되도록 수식 적용

□ 건설업조사의 공표주기에 따라 매년 표본추출틀을 주기적으로 개편

○ 개편주기: 모집단인 건설업조사의 공표주기에 따라 1년 주기로 표본추출틀 개편

○ 개편 필요성: 현실 반영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변화된 모집단 구조 반영 필요

○ 개편방법: 상기 기술한 표본추출틀 구축 과정을 거쳐 매년 최신의 표본추출틀 작성

7.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추출방법

○ 절사추출법(Cut-off method)으로 총기성액 상위 기업체를 선정

○ 모수 및 분산 추정: 확률표본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 최근년 건설업조사 결과의 종합건설업체 중 총기성액을 기준으로 상위업체 순으로 건설수주는 54%, 건설기성 50%의 대표도가 유지되도록 선정하며, 시도별 대표도가 40% 유지되도록 선정함

□ 표본크기 결정

○ 총기성액을 기준으로 건설수주는 대표도 54%, 건설기성은 대표도 50%

- 건설수주는 시도별 대표도가 40%를 유지하도록 설계
- 대표도 50~51% 구간의 기업체는 대표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건설기성 병행조사

* 건설기성의 대표도 50%는 건설수주 통계와의 비교가능성 및 조사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음(건설기성통계조사 개발보고서, 1999.12.)

□ 표본배분 방법

○ 2023년 기준 건설업조사의 일반건설기업체 국내기성액 누적구성비 기준으로 건설수주대표도(54%) 및 건설기성대표도(50%) 수준의 조사대상처를 절사법(cut-off sampling)으로 추출

○ 지역(시·도)별 기성액 대표도 최소 40% 이상 유지

□ 표본추출 결과

○ 표본확정

- 지방청을 통하여 기업체 존재여부, 대상여부, 명부사항 등 확인하고, 조사불능 기업체가 있을 경우 대표도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가기업체 선정하여 최종 표본확정

기업체수(개)		기준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표본추출틀		10,620	11,037	11,370	11,891	12,399	15,203	15,903
표본	건설수주	837	974	1,424	1,573	1,617	1402	969
	건설기성	457	519	769	829	850	726	471

8. 표본관리

□ 표본보완

○ 매년 최신 건설업조사 결과로 표본을 보완하여 현실 반영도 및 정확성 제고

□ 표본관리

○ 매월 조사대상업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말일까지 기업체 변동보고서를 작성

- 휴업: 6개월까지는 휴업으로 유지하면서 매월 방문하여 활동재개 여부 확인
- 부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 및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사 유지
- 폐업·합병: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합병·흡수된 경우 조사중지
- 대상외: 종합건설업 면허를 상실(반납·취소) 등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조사중지
- 이전: 해당 관할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조사계속
- 기타 변동사항: 기업체명, 전화번호, 응답자, 응답부서, 대표자 등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다양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편의에 맞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비대면 조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조사방법을 검토함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조사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 통계조사관(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이하 조사담당자
- 또한 전화, e-mail, FAX 등의 방법과 기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CASI* 또는통신매체포함)등으로 조사하고 있음
 * CASI: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ing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한 직접 입력)

□ 조사과정

○ 이메일 및 팩스 조사

-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업체 담당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후 회신

○ 전화 조사

- 단일 수주의 경우 전화조사가 응답이 빠른 경우도 있어서 해당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조사 담당자가 대상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문답하는 방식으로 조사

○ 온라인 조사 (CASI)

- 조사업체가 응답내용을 직접 CASI시스템에 기입함으로써 회수된 조사표의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낮추고 조사원의 업무량 경감 등을 위해 실시함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담당자 현황 및 처우

○ 건설경기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등 주요 경상조사는 지방통계청의 공무원(일반직) 또는 통계조사관(무기계약직)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969개 기업체는 152명이 조사 분담(25.1월기준)

구 분	전체	공무원 (일반직)	통계조사관 (공무직)
인원수	152	64	88
(비율)	100.0	42.1	57.9

○ 조사 담당자 처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

3. 조사원 교육

* 조사원 미채용으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참고로 조사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통계조사관(무기계약직)의 교육 내용을 기술

□ 조사원 교육에 대한 일정

○ 집합 교육: 워크숍 및 지방청 방문을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함

1) 워크숍 교육
- 일정 및 시간: 2023.11.14.(화)~11.15.(수), 1박 2일
- 강사: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사무관 및 주무관

2) 지방청 순회 교육
- 일정 및 시간: 2023.9.5.(화)~9.15.(금)
- 강사: 산업동향과 사무관 및 주무관

□ 조사원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1) 워크숍 교육
- 내용: ·경제동향통계 연간보정 및 표본보완 등 협조요청
 ·경제동향통계 관련 종합 질의 응답
 ·자유 토론을 통한 경제동향통계 개선 방향 모색
- 방법: 워크숍(경제동향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2) 지방청 순회 교육
- 내용: 2023년 산업활동동향 조사지침 교육
- 방법: 소집교육

○ 워크숍은 연 1회(1박2일) 실시하며, 집합교육은 연중 1회~2회 업무 담당자가 지방청을 방문하여 2시간 내외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워크숍, 지방청 방문 교육을 통해 수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교체된 조사원에 대하여도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에 2시간 내외의 교육 시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교육 교재

○ 업무발전토론회 시 교육 자료는 근거서류로 첨부

○ 지방청에서의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조사교육 자료는 지침서를 활용함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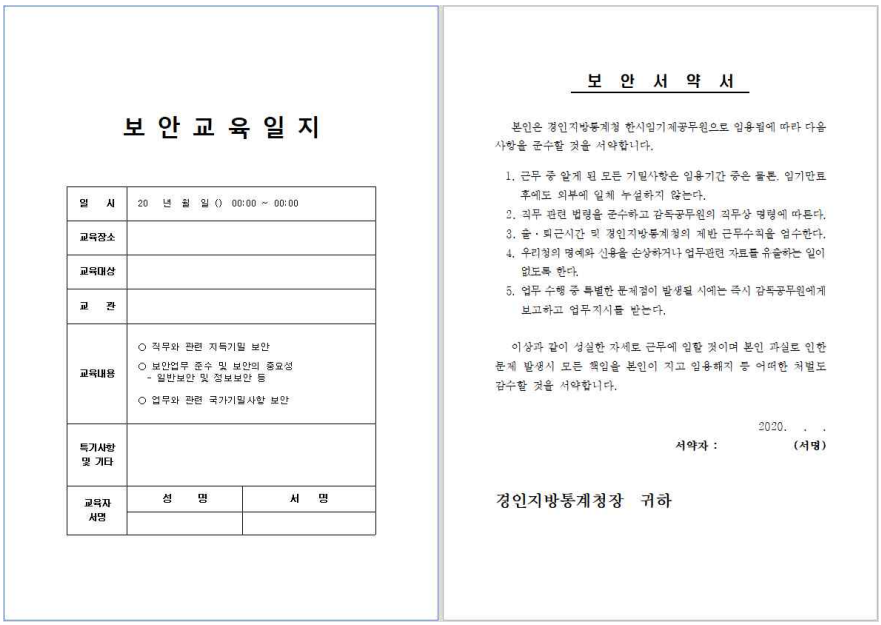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한 교육: 각 지방청 및 사무소별 자체 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은 기존 조사담당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동일

□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또는 서약서 작성

○ 각 지방청별 지침서 교육 시 보안교육 병행 진행하여 관리함

○ 공무원 신분이므로 별도의 서약서는 받지 않으며, 교육 실시 중에 더욱 엄중하게 비밀 보호에 대해 교육함



보 안 교 육 일 지

일 시	20 년 월 일 ()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 관		
교육내용	○ 직무와 관련 지득기밀 보안 ○ 보안업무 준수 및 보안의 중요성 - 일반보안 및 정보보안 등 ○ 업무와 관련 국가기밀사항 보안	
특기사항 및 기타		
교육자 서명	성 명	서 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경인지방통계청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임용기간 중은 물론, 임기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경인지방통계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임용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서명)

경인지방통계청장 귀하

□ 조사원의 업무지식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조치

○ 별도의 평가프로그램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지식에 대한 미흡한 점 등이 발견될 시 재교육 등을 통해서 보완함

○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으로 별도의 평가는 없음

4. 조사원 업무량

□ 업무량 배정

○ 건설경기동향조사는 지방통계청 조사 담당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공무직)의 경상 업무로, 업무량은 지방청 및 사무소별 자체 계획에 의해 배정함

○ 개인별로 맡은 다른 업무, 조사구 거리, 조사환경 등이 다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실시함

□ 응답소요시간

○ 면접조사 소요시간은 ′조사준비-이동(대기시간 포함)-기입지도-면접조사-조사표 정리-입력 및 전산 내검′을 1일에 조사를 완료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간임.

조사 주기	대상처당 면접조사 소요시간(분)						
	조사 준비	이동 (대기포함)	기입 지도	면접 조사	조사표 정리	입력 및 전산내검	계
매월	12.5	18.4	0.0	36.7	23.7	18.1	109.0

(자료출처: 2020년 지방통계청 업무량 측정 용역 최종보고서)

5.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실시에 대한 조사업무 흐름도



※ 날짜는 월별로 달라질 수 있음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조사대상 사전통지, 조사명부 보완

○ 매년 표본보완시 신규 대상처에 대해 조사 협조요청 공문 및 안내장을 배부(발송)함

- 해당 연도의 조사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목적과 활용 등의 설명을 통해 조사 협조를 유도하며 조사명부를 작성함

○ 매월 기존 대상체에 월간 일정을 안내하고, 전월 조사기간에 파악한 대상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사명부를 보완함

7.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수주

1. 공종 세분류명 및 발주자 세분류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발주자 분류는 조사지침서에 의거 기재
 - 정확한 공사명 및 발주자명을 기재
2. 수주금액은 발주자와 체결한 총 공사계약액임(부가가치세 포함, 토지구입비 및 보상비 제외)
 -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비가 있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주액에 포함
3. 직영공사(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자기공사)는 수주액란에 공사계획 확정시 예정 총 공사비를 기재(그 공사에 소요되는 지가(地價)는 제외)하되, 계약 확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시의 예정 공사비를 기재
4.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하여 발주한 공사는 원 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재
5. 국가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을 “xx 공사”로, 발주자명을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동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주한미군일 경우)으로 기재
6. 지역명은 17개 시, 도까지 기재

○ 건설기성

1. 건설기성실적은 공사대금의 청구·지급과는 상관없이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가를 제외한 공사비에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부가가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 직영공사는 지가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성실적으로 기입
2. 국내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3. 당월 및 전월의 실적은 조사월의 전월 및 전전월에 시행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누계액이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4. 발주자 및 공종 분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고, 분류기준과 상이하거나 세분되는 경우 그 명칭을 비고란에 기입

□ 조사표 회수 시 검토사항

○ 공사별 관장 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부서를 모두 방문하여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일부 부서의 자료만 조사되어 당월 수주 및 기성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다른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가 수주나 기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 발주자공급 원자재비가 수주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부가가치세가 수주나 기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수주액, 착· 완공예정년월, 공사지역의 누락여부 및 항목간 합리성을 확인

○ 전년동월 및 전월과 현저한 차이(±30% 이상)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

□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기업체명: (주), (유)를 포함한 조사기업체의 정식명칭을 기입

○ 소재지(주소): 응답자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기입

○ 기업체고유번호: 산업동향과에서 제공하는 기업체고유번호를 기입

○ 조사방법: 조사표작성 및 회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	면접	전화	FAX	우편(E-mail)	CASI	CATI
부호	1	2	3	4	5	6

○ 공사명: 정확한 공사명을 파악하고 공종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
- 공사명이 길다고 줄여서 기입하지 말 것
-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증액)' 혹은 '(감액)'을 공사명 앞에 기재

○ 공사종류 세분류명(분류부호):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과 부호를 기입

○ 공사지역(부호):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공사가 진행될 지역의 시도명 및 시도부호 기입

○ 발주자명: 계약서상에 나타난 정식 명칭을 기입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기입

○ 발주자세분류명(분류부호):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과 부호를 기입

○ 건설수주액: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임
-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계액금액뿐만 아니라 매출부가가치세액(10%)과 관급자재비 등 발주자 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토지보상비는 제외)

○ 착공예정월, 완공예정월: 총공사기간을 기입하며 공구별(도로, 철도 등)로 수주한 경우는 공구별 공사기간을 기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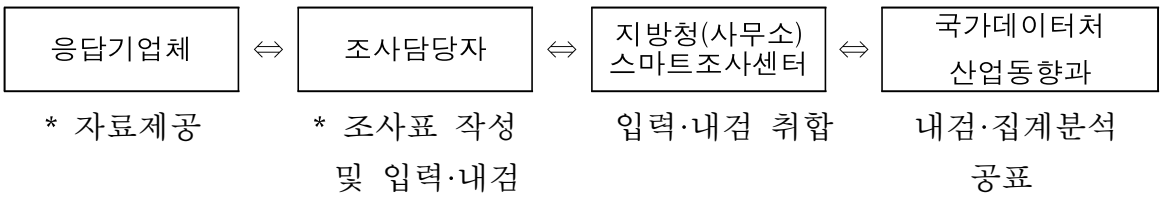
○ 기성액: 건설기성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임
- 부가가치세(이윤 포함)를 포함해야 하며,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발주자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해야함
-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 공종분류 및 발주자분류 등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조사지침서(별첨)』참고

8. 조사 관리

□ 조사 관리 체계

○ 관리체계



□ 조사 관리 방법

○ 조사담당자 관리: 지방청(사무소) 팀장 및 조사 총괄자

○ 응답기업체 관리: 조사담당자(공무원 및 통계조사관)가 조사 지침서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등 관리

○ 지방통계청(사무소) 단위로 팀장, 조사총괄자, 조사원으로 구성됨

- 사무소별로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는 1명 ~ 15명임

□ 조사 관리자 역할

○ 조사 관련 업무 총 지휘, 업무 제반사항 점검 및 지도

○ 조사진행 상황 점검, 조사표 내검 지도 및 미흡사항 보완 요구

○ 불응 대상처에 대한 설득 지원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사지도(지도점검) 실시

○ 실사지도 겸 불응기업체 설득 병행을 위한 출장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지방청 순회를 통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 교육을 실시하였음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질의 응답 체계 및 운영방법

○ 응답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CASI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하면 질의를 받은 조사담당자나 본청 담당자가 직접 답변

-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담당자의 연락처로 질의
- 협조공문에 기재된 본청 담당자의 연락처로 질의
- CASI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내용 등록

○ 조사담당자: 다양한 방식으로 본청 담당자에게 질의하면 일대일로 답변을 하고, 공유할 만한 사례에 대해서는 메모보고에 공지하거나 조사지침서에 수록함

- 조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질의 응답 코너 운용
- 주요 사례별 처리 방법을 지침서에 수록하여 현장조사에 활용

- 매월 초 메모보고를 통하여 조사담당자에게 일정, 유의사항, 질의 및 착오유형 등을 전달
- 매월 조사담당자가 수시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산업동향과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 주요 질의응답·오류사례 관리방법

○ 『조사지침서(별첨)』에 조사항목별 사례별 처리지침, 착오사례 등에 대해 축적하여 관리

10. 조사(또는 응답) 대상

□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 이유

○ 적격 응답자
- 기획팀, 회계팀, 계약팀, 사업팀, 공무팀 등의 담당자

○ 지정 이유
- 조사표 작성에 충분한 이해와 답변이 가능한 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사내용이 대상 기업체의 중요 기밀사항이므로 자료 접근 권한이 있거나 취합할 수 있는 담당자가 결재 등 공식 제공 절차를 거쳐 응답하도록 하고 있음

□ 기억응답

○ 조사대상시점의 익월이 조사시점이므로 기억응답은 해당없음

11. 무응답 대처

□ 항목무응답 대처방법

○ 조사표 구조상 항목 무응답은 해당없음
- 항목 무응답시 입력이 완료되지 않음

□ 단위무응답 대처방법

○ 불응대상처 판정
- 조사대상처가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팀장, 불응설득반 또는 조사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협조를 요청
- 2회 차 추가설득에도 불응 시, 불응일시·설득방법·불응사유 등이 기재된 「불응기업체 설득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팀장 및 부서장 결재로 설득중단 가능
- 불응대상처로 판정 시, 「불응기업체 설득 현황」을 첨부하여 산업동향과로 보고

○ 불응대상처 이행강제절차
- 자료제출명령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미제출 의견 검토 → 과태료 부과처분
- 단, 산업동향과의 판단으로 자료제출명령의 실익이 없는 기업체는 제외 가능

○ 단위무응답 대체값 입력
- 건설수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입력
- 건설기성: 월별 변동추이(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변동), 최근 수주동향 및 공사현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체값으로 입력

12. 표본대체

○ 단위무응답(응답자의 불응 등)에 대한 표본대체는 허용하지 않음

13.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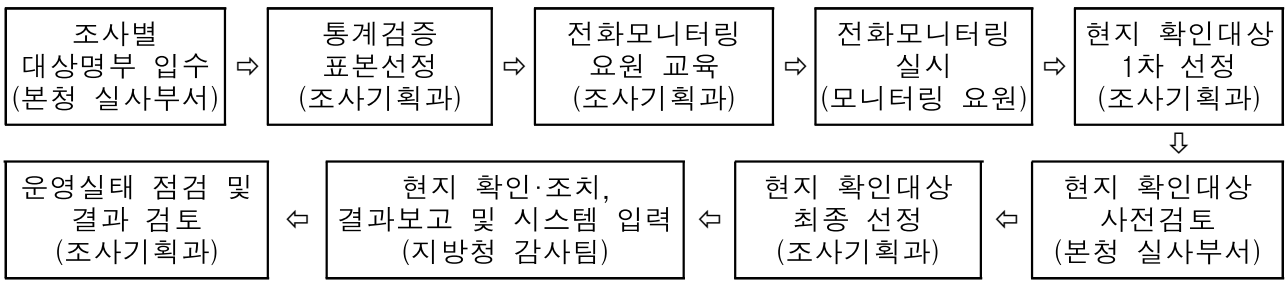
□ 조사기획과 통계조사검증

○ 조사기획과 주관으로 격년으로 실시

○ 검증내용: 실제조사 및 방문여부, 정확성 검증항목 확인 등

○ 검증방법

- 모니터링요원이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통해 통계조사별 점검 매뉴얼(질문지)에 따라 검증 실시
- 전화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조사대상처에 대해 지방청 조사지원과(감사팀)에서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실시결과(2022년 실시 결과 기준)

- 정확성 검증항목의 일치도

(대상처수, %)	계	일치	오차범위		불일치
			0%(정일치)	±30%	
건설경기동향조사	2(100.0)	2(100.0)	2(100.0)	-	-

○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결과 비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지방통계청 자체확인점검

○ 지방통계청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

14. 행정자료의 수집 및 관리

□ 행정자료 활용 목적

○ 건설수주에서 신규 및 변경 계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현장조사 업무량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규모가 작은 업체에 한하여 자료대체

□ 행정자료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제약 사항

○ 행정자료가 조사대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 조달청 등 계약자료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사로 한정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는 아래의 경우만 의무공시 대상임

·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2.5% 이상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사대장자료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만 보고대상이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직영공사 및 1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제외됨

○ 수주시점이 조사지침과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조사 지침상 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자료는 이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행정자료 내용 및 항목

○ 계약일자, 공사명, 건설업체명, 건설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발주자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15. 행정자료 입수 방법 및 경로

□ 관리기관 및 입수경로

○ 매월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입수 주기	관리 주기	관리기관	자료 위치	수집 내용	홈페이지 주소	비고
매월	수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사계약내역, 공사계약구성업체내역	data.g2b.go.kr	인증서 로그인
매월	수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계약목록	www.g2b.go.kr	
매월	수시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ebid.lh.or.kr	
매월	수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신규공사정보, 변경공사정보	www.kiscon.net	인증서 로그인
매월	수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dart.fss.or.kr	조회결과 출력

○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관리기관 기준)

관리기관	자료 위치	원래 목적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에 따라,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달정보를 데이터셋과 오픈API로 제공
조달청	나라장터	▫ 거래비용 절감, 투명한 조달행정,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 모든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이 이용하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 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자화 - 시스템 연계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과정을 전자화하여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처리체계로 전환하였음 - 입찰업무 전과정의 온라인화 및 선진화 - 심사업무의 투명성 - 민원서비스 향상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지방자치단체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 - 2003.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정보 관리 - 2003.9.1일부터 건설업행정 처리결과를 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 행정자료 활용 관련 보완,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2. 18.>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2023. 7. 18.>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8.>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2023.7. 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 7. 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8.>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7. 18.>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 건설경기동향조사에 활용되는 조달청 및 키스콘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시 자료보안 및 접근제한을 담당팀장, 담당자만 활용자료 관리함

- 문서로 기초자료 요청 후, 회신 된 시설공사계약내역자료는 문서 접수 시 열람불가 처리후 자료보안 및 접근제한을 담당팀장, 담당자만 활용자료 관리함
- 지방청 활용시 공무원 신분이므로 별도의 서약서는 받지 않으며, 교육 실시 중에 더욱 엄중하게 비밀 보호에 대해 교육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함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코딩부호 및 코드체계

○ 조사방법

구분	면접	전화	FAX	우편(E-mail)	CASI	CATI
부호	1	2	3	4	5	6

○ 공사지역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 호	11	21	22	23	24	25	26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 공종별 분류 항목표

- 건설수주

부호	공종세분류명 (건축)	부호	공종세분류명 (토목)
	- 주택	201	- 치산·치수
111	신규주택	202	- 농림·수산
121	재건축주택	203	- 도로·교량
131	재개발주택	204	- 항만·공항
102	-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205	- 철도·궤도
103	- 공장·창고	206	- 상·하수도
104	-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207	- 발전·송전, 옥외 전기, 통신
109	- 기타 건축	208	- 토지조성
		209	- 댐
		210	- 기계설치
		211	- 조경공사
		219	- 기타 토목

- 건설기성

부호	공종세분류명 (건축)	부호	공종세분류명 (토목)
101	- 주거용	201	- 일반토목
102	- 비주거용		· 수주의 토목 중 아래 3가지 공종(207, 210, 211) 제외한 모두
		202	- 전기기계
			· 발전·송전, 옥외 전기 · 통신(207)
		203	- 플랜트
			· 기계설치(210)
		204	- 조경공사(211)

○ 발주자별 분류 항목표

- 건설수주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 공공		○ 민간	3000	○ 국내외국기관
1010	- 정부		- 제조업		
1020	- 지방자치단체	2110	·음식료품 제조업	2**1	○ 민자유치사업
1030	- 공기업	2120	·섬유·의류 제조업		- 민간의 발주자분류
1090	- 기타공공단체	2130	·석유·화학 제조업		코드 네 번째에 '0'
		2140	·1차 금속 제조업		대신 '1'로 구분
		2150	·기계 · 장치 제조업		
		2190	·기타 제조업		* 외국기업체는
			- 비제조업		민간으로 분류
		2210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20	·도소매, 금융및사업서비스업		
		22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50	·건설업		
		2290	·기타 비제조업		

- 건설기성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부호	발주자명
101	○ 공공		○ 민간	301	○ 민자
		201	- 직영공사1)	401	○ 외국기관
		202	- 도급공사2)		* 외국기업체는
		20*	· 외국기업체		'민간'으로 분류
			민간으로 분류		됨에 유의

2.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및 내용

○ 조사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조사표 내용을 입력

- 조사방법이 CASI인 경우, 조사대상처에서 인터넷조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입력 및 내검 시스템 연계

- 내검 관련 각종 규칙들이 시스템 내 내장, 입력 단계에서 자동으로 오류 위치 확인 가능

□ 입력매뉴얼

○ 조사지침서(첨부) 「Ⅲ. 내용검토 및 입력」 참고

□ 자료 입력 교육

○ 조사원 교육 훈련시 함께 실시하고 있음.

- 참고: Ⅲ. 자료수집의 『3-4 조사원 교육훈련』 참고

3. 자료내검

□ 조사표 작성시 주요검토사항

○ 기업체번호 일치 등 일반사항 검토

○ 항목누락여부

○ 조사금액 단위 착오(금액단위 : 100만원)

○ 항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 공종분류, 발주자분류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내 공종, 발주자 분류 기존 입력 자료 검색 기능 활용

○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 건물단순보수공사기간의 30개월 이상 등 공사내용과 기간의 부적합성 확인

○ 수주 또는 기성금액이 1,000억이상일 경우 토지금액 포함여부 검토

○ 공사기간에 비하여 수주금액이 적을 경우 관급자재 누락여부 검토

○ 건설수주의 경우 반드시 최종계약완료시점에 조사되어야 하므로 최종계약시점 재확인

○ 전년동월, 전월비 3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유기입이 되어 있는 지 확인

- 시스템 내 과거자료 검색기능 활용

○ 건설기성의 경우 실제 공사실적 조사유도

○ 건설기성의 경우 수주와 연계하여 적정성 검토

○ 감액수주의 경우 과거자료 검색하여 최초수주시점 파악하여 비고란에 작성

- 최초수주시점,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등 비고란에 작성

□ 조사표 입력시 주요검토사항

○ PAPI(종이조사)

- 항목누락여부
- 금액, 분류코드 입력착오
- 항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 공종분류, 발주자분류의 적정성 검토
 · 전산내검 프로그램 및 분류검색기능 활용
- 전년동월, 전월비 3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유입력여부
- 전산내검 프로그램 실행 후 자료수정 및 사유기입
- 감액수주의 경우 과거자료 검색하여 최초수주시점 파악하여 비고란에 작성
 · 최초수주시점,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등 비고란 기입 및 전산내검사항 기입

○ CASI(인터넷조사)

- 입력기간 내 입력확인

- 조사금액 단위 착오(금액단위 : 100만원)
- 공종분류, 발주자분류 등 항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 건물단순보수공사기간의 30개월 이상 등 공사내용과 기간의 부적합성 확인
- 수주 또는 기성금액이 1,000억 이상일 경우 토지금액 포함여부 검토
- 공사기간에 비하여 수주금액이 적을 경우 관급자재 누락여부 검토
- 건설수주의 경우 반드시 최종계약완료시점에 조사되어야 하므로 최종계약시점 재확인
- 전년동월, 전월비 3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유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 건설기성의 경우 관기성일 경우 실제 기성실적 조사유도
- 전산내검 프로그램 실행 후 자료수정 및 사유기입
- 감액수주의 경우 해당 기업체에 최초 수주시점 등 재확인
 · 최초수주시점,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등 전산내검사항에 기입

□ 본청 조사결과 내용검토 및 수준점검

○ 최종자료검토 및 확정
- 미입력 기업체 확인
 · 나라통계시스템 > 건설경기동향조사 > 입력현황 > 지방청사무소현황 > 조사표입력현황
 · 미입력 기업체 담당자 조회 및 독려
- 최종 입력 완료 후 자료 출력 및 검토

○ 전산내검
- 자료입력 완료 후 전산내검을 실행하여 사유기입의 적정성 검토 후 지방청 확인

○ 자료출력
- 나라통계시스템 > 건설경기동향조사 > 조사표관리 > 조사표출력 > 조사연월 > 수주/기성
 · 조사기간 설정 가능
 · 수주/기성 선택가능
- 위 자료를 엑셀로 자료받기 > 내검하기 편한 양식으로 자료전환

○ 자료검토
- 출력한 자료를 검토가 용이한 서식으로 전환한 후 내용검토실시
 · 실적(수주, 기성)없음, 불응에 대한 자료 재확인(사유 등)

<건설수주>
 · 공종확인(공사명 보고) : *공종이 131 재건축주택 인데 토지조성인 경우 확인 필요
 · 발주자 : *민자(뒤코드 번호 1) 필히 확인
 · 금액 : 1000억이상 반드시 인터넷으로 검색 확인 및 지방청(사무소)에 재확인 요망
 · 공사명에 있는 지역과 공사지역 일치 확인

<건설기성>
 · 조사표 전체 출력 *직전 4개월간
 · 기성액 비교(100억이상, 1000억이상)
 · 월기준 동월비 등(100%이상 증가, 100%이상 감소)

- 내검결과 내검질의 및 오류수정
 · 지방청질의 > 결과확인 > 착오사항 정정입력
- 최종 내검 완료 후 최종금액 확정, 프로그램 집계표 작업

□ 자료검토시 유의사항

○ 공종확인(공사명 보고) : *공종이131 재건축주택 인데 토지조성인 경우 확인 필요
○ 발주자 : *민자(뒤코드 번호 1) 필히 확인
○ 금액 : 1,000억이상 반드시 인터넷 검색확인하고 지방청 직원에게 재확인 요망
○ 공사명에 있는 지역과, 공사지역, 지역번호 3개 코드 일치확인
○ 공종별 확인, 발주자별 확인 : 필터링 걸어 모니터로 직접 확인
○ 기성은 4개월분 변동폭이 큰 자료 확인, 전월차 및 전년동월차 큰 업체별내역, 지방확인

□ 건설수주 내검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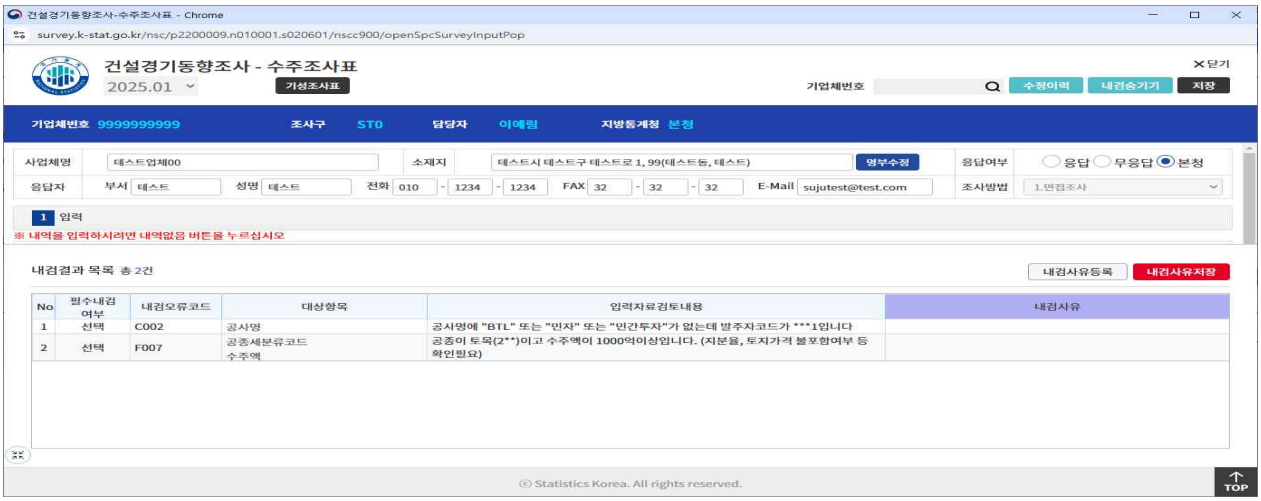
○ 조사표와 입력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지정단위(백만원)의 적용여부 검토
○ 각 항목별 연관 관계 확인(수주액, 발주자별, 공종별, 공사지역, 공사명, 공사기간 등)
 - 컨소시엄 구성시 지분율만큼만 기재, 민자의 경우 새로운 법인 기재, 토지가격제외여부
 - 공사명 부여시 구체적인 시군구 부여(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 사업체홈페이지 및 인터넷검색을 통한 대형 공사의 계약내용 확인

□ 건설기성 내검시 유의사항

○ 조사표와 입력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지정단위(백만원)의 적용여부 검토
○ 각 항목별 연관 관계 확인(발주자별, 공종별, 공사현장수 등)
 - 누적기성액 여부 확인(당월실적만 반영)
○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증감에 영향을 준 대형공사의 착공 및 완료여부 등을 확인후 비고란에 기재
○ 건설경기동향조사 입력 프로그램에서 시계열자료를 출력하여 내용검토시 활용
○ 잠정자료인 경우 확인 후 확정자료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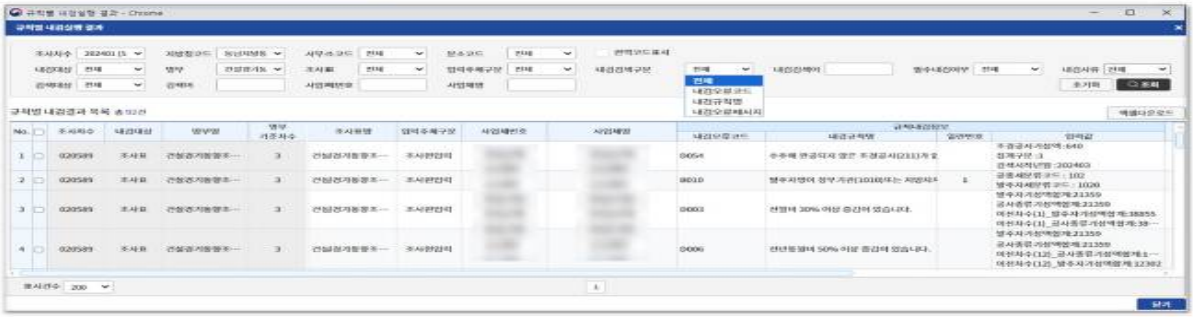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화면과 내용

○ 조사표입력 화면에서 저장과 동시에 전산내검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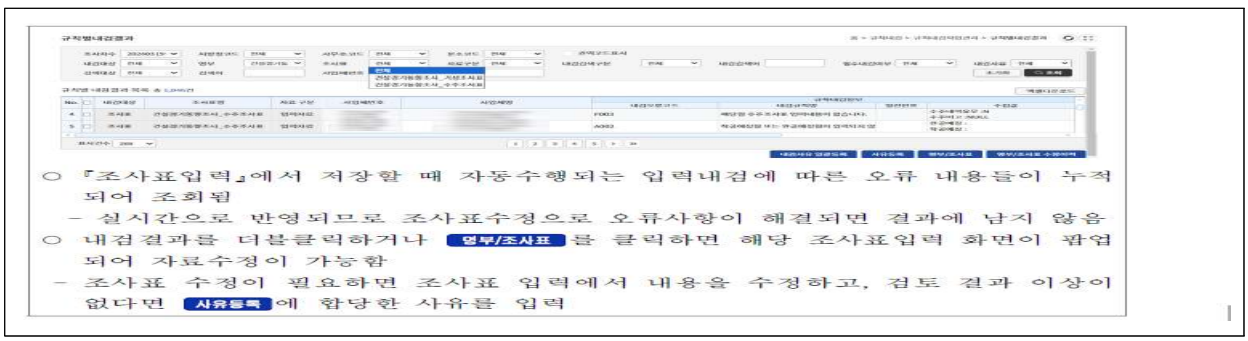
○ 조사표입력에서 오류가 있는 기업체에 대한 결과 수정 및 관리 화면

4 실행결과 – 규칙기준 – 조사표 숫자를 클릭하면 규칙별 내검결과 화면이 팝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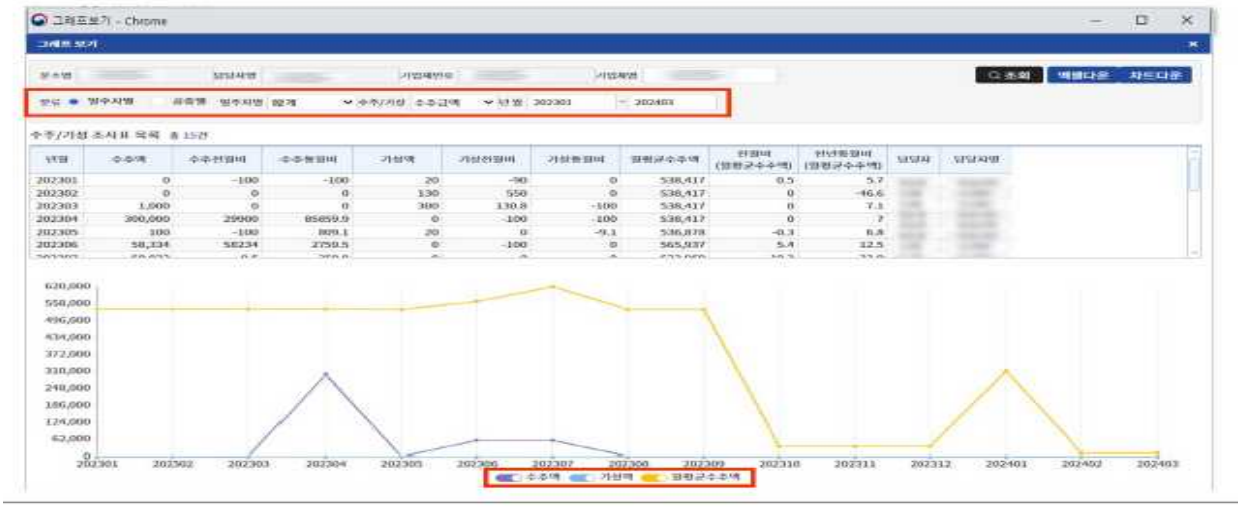
* 규칙별 내검결과 확인만 가능하며, 수정은 규칙별 내검결과(119p)에서 가능함

○ 입력내검결과 확인 및 조사표 수정



○ 탐색적 자료분석 및 시계열 조회로 이상치 탐색

- 아래의 경우, 최근(전월까지)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 월평균 수주액도 큰 변동이 있는데, 기성 전월비가 100% 미만이라 추가 확인이 필요함
- 건설기성 본청 내검 시 이상치에 대한 사항을 지방청에 송부하고, 지방청에서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을 회신



5. 무응답 실태

□ 단위무응답 대처방법

○ 불응대상처 판정

- 조사대상처가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팀장, 불응설득반 또는 조사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협조를 요청
- 2회 차 추가설득에도 불응 시, 불응일시·설득방법·불응사유 등이 기재된 「불응기업체 설득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팀장 및 부서장 결재로 설득중단 가능
- 불응대상처로 판정 시, 「불응기업체 설득 현황」을 첨부하여 산업동향과로 보고

○ 불응대상처 이행강제절차

- 자료제출명령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미제출 의견 검토 → 과태료 부과처분
- 단, 산업동향과의 판단으로 자료제출명령의 실익이 없는 기업체는 제외 가능

○ 단위무응답 대체값 입력

- 건설수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입력
- 건설기성: 월별 변동추이(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변동), 최근 수주동향 및 공사현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체값으로 입력

○ 단위무응답률 = 불응 기업체수 ÷ 조사대상 기업체수 × 100%

- 단위 무응답률: 1.1%('24년 12월분 기준)

6. 가중치 조정

○ 건설경기동향조사는 절사추출법에 의한 비확률표본이라 설계가중치 조정 미실시

○ 건설경기동향조사는 별도로 무응답 가중치를 조정하지 않음

7. 디플레이터

□ 디플레이터의 개요, 특성, 적정성

○ 개발배경 및 목적

-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실질적인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을 위하여, 『중장기 국가통계

시스템 개혁방안』('06년 5월)에서 건설기성디플레이터(건설물가지수)를 개발하기로 함

- 국내 유사지수로는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와 「실적공사비지수(조달청)」가 있으나 작성목적 및 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불변건설기성액을 산출하기에는 부적합
 ·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공사비의 물가변동분을 산출하여 건설공사계약액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치산정 및 분류체계 등이 상이함
 · 실적공사비지수: 집계대상 품목간의 가중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평균값을 이용하여 등락률 산정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의 분류체계가 상이함

○ 2010. 3월부터 불변 및 불변계절조정 기성액을 작성하여 공표

□ 디플레이터(2020년=100) 작성방법

○ 활용통계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주기	비고
2020 산업연관표(I/O)	한국은행	건설부문별 투입, 산출액	연간	가중치
생산자물가지수(PPI)	한국은행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월	가격변동
2020 건설업 임금총액	국가데이터처	종사자별 급여액	연간	가중치
건설근로자급여액	노동부	종사자별 급여액	월	가격변동
건설업 임금단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연2회	가격변동

○ 가중치자료: 2020년 산업연관표상(I/O) 건설부문의 투입구조를 이용

○ 가격자료: 202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기본 및 품목지수,
노동부 임금자료(상용임금), 대한건설협회 노임자료(임시임금)

○ 지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공종별
건설	건축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건축보수
	토목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환경정화시설신설, 발전소시설, 산업플랜트, 기타건설

○ I/O 대상품목 선정

- 중간투입: I/O품목 중 중간투입총액의 1/1,000이상 품목을 선정하고, 제외품목은 통합하여 기타(분류불명)품목으로 처리
- 부가가치: I/O품목 중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간접세

○ I/O 품목과 가격자료 연계방법

- 중간투입: I/O 품목에 대응하는 PPI 품목 및 기본지수 적용, 기타는 PPI 총지수 적용
- 부가가치: 피용자보수는 국가데이터처 건설업조사, 노동부 임금자료, 대한건설협회 노임자료를 임금지수화하여 작성,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간접세는 PPI 총지수 적용

○ 지수산식

- 기준년 고정 산술평균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적용

○ 지수접속

- 2020년 이전 자료의 경우 접속계수(단순비례법 적용)를 이용하여 접속
 · 기준년 기준 과거시계열 = 기준년직전 기준 시계열 × 접속계수

· 접속계수 = 100 ÷ (직전 기준연도 기준에 의한 당해 기준연도의 연평균 지수)

□ 디플레이터의 불변화 방법

○ $불변기성액_{건설} = 불변기성액_{건축} + 불변기성액_{토목}$

- $불변기성액_{건축} = 경상기성액_{건축} \div 기성디플레이터_{건축} \times 100$
- $불변기성액_{토목} = 경상기성액_{토목} \div 기성디플레이터_{토목} \times 100$

8. 계절조정

□ 계절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 지표의 단기동향(전월대비) 분석을 위해 원계열에서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을 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2월)

<원계열>

추세변동요인
순환변동요인
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요인
불규칙변동요인

계절변동조정 →

<계절조정계열>

추세변동요인
순환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 계절조정방법 및 버전

○ X-13ARIMA-SEATS 방법 이용

□ 계절조정 작성 방법

○ 매년 초(2월) 전년도 시계열을 추가하여 계절모형을 선정하고 새로운 계절조정 인자(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요인)를 산출하여 계절조정계열 작성

계절조정 산출과정

○ X-13-ARIMA 방법 이용

- X-13-ARIMA 방법은 ① RegARIMA에 의한 사전조정계열 작성 및 연장, ② X-11에 의한 계절조정(이동평균) 및 ③ 계절조정결과의 사후진단 등으로 구성
 - ① RegARIMA에 의한 사전조정 : 원계열 → 사전조정(명절효과, 조업일수효과 및 특이항 조정) → ARIMA 모형 선정 및 사전조정계열 연장
 - ② X-11 계절조정(Moving Average) : 계절이동평균 기간 선택 → 추세이동평균 기간 선택 → 불규칙요인 이동표준편차 관리한계영역 설정 → X-11 이동평균 → 계절조정계열 작성
 - ③ 계절조정결과 사후진단 : Q-통계량 및 스펙트럼 분석 등

○ 작성프로그램 : X-13ARIMA-SEATS

○ 계절조정계열의 작성방법은 건설수주총액 및 기성 하위계열은 직접법, 기성총액은 공종별 계절조정계열을 합한 간접법 적용(2010년 변경)

□ 계절조정 적용 전후 비교

< '20~'23년 신·구 계절조정 적용 전후 비교 >

구 분	증감률 부호 변경	전월비(%) 분포		전월비 표준편차	
		구계열	신계열	구계열	신계열
건설기성(불변) 총액	4개	-9.4 ~ 11.1	-8.1 ~ 10.7	3.2	3.2

* 신·구 계절지수 모두 연간보정 후 자료를 사용 (계절인자만 다르게 적용)

□ 계절조정 작성 현황 및 공표

통계명		작성	공표
건설경기 동향조사	건설수주	○ 수주(경상)총액 등 5개 계열	○ 수주(경상)총액 1개 계열
	건설기성	○ 기성(불변)총액 등 2개 계열 ○ 기성(경상)총액 등 6개 계열	○ 기성(불변)총액 등 3개 계열 ○ 기성(경상)총액 등 5개 계열

○ 건설수주의 경우 불규칙성이 매우 높아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계절조정 전월비를 주지표로 활용함에 한계가 있음(경제분과위 결과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도록 권고 받음)

□ 계절조정의 시계열 보정 주기

○ 보정주기: 매년(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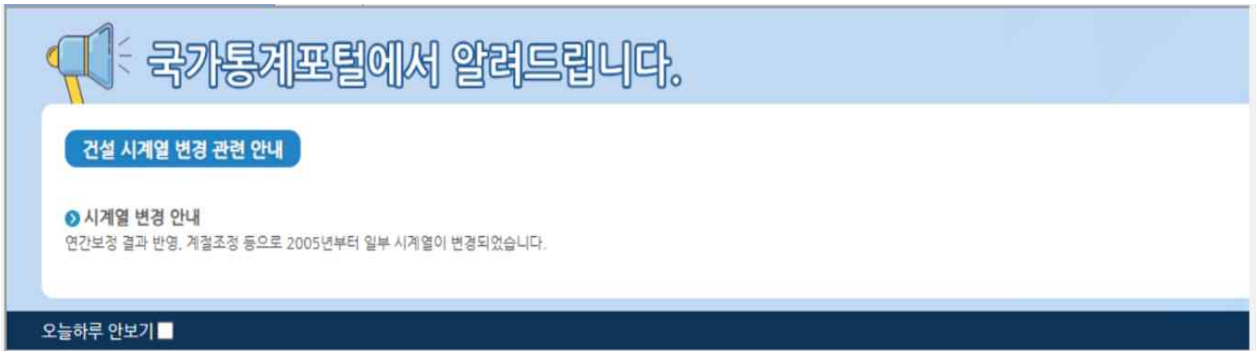
○ 보정 이유: 시계열의 의미 ·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고 달라진 부분을 보정하기 위함

○ 보정 내용: 전년 원계열을 추가하고 과거 일정 계열까지 재산출

○ 보정 방법: 9개 계열(수주경상 1, 기성불변 3, 기성경상 5)의 계절조정계열 작성

○ 보정기간: 계절조정에 사용된 원계열 기간

- 2025년부터는 2005.1월부터의 계절조정계열을 보정
- 보도자료, KOSIS 통계자료 주석, KOSIS 안내팝업(1달간)을 통해 보정내용 안내



9.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행정자료 매칭방법

○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변수

- 기업체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번호(공사번호)

○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참고용으로 제공된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조사표에 입력한 자료는 계약번호(공사번호)를 이용하여 매칭
- 조사담당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는 기업체번호, 공사명 등을 이용하여 매칭

□ 행정자료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제약 사항

○ 행정자료가 조사대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 조달청 등 계약자료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사로 한정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는 아래의 경우만 의무공시 대상임
 ·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2.5% 이상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사대장자료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만 보고대상이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직영공사 및 1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제외됨

○ 수주시점이 조사지침과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조사 지침상 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자료는 이와 상이한 경우가 있음

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연번	구 분	통계표명	분류수		
			공종	발주자	지역
1	건설수주	발주자/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23	23	
2		공종별 건설수주액(계절조정)	1		
3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계절조정)		1	
4		발주자별(국내대규모공사) 건설수주액(경상)		23	
5		공종별(국내대규모공사) 건설수주액(경상)	23		
6		발주자/공종별 수주건수(경상)	23	23	
7		공사지역/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5		20
8		공사지역/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3		20
9	건설기성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		7	
10		공종별 건설기성액(경상)	9		
11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계절조정)		2	
12		공종별 건설기성액(계절조정)	3		
13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3		
14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_계절조정)	3		

□ 통계 공표범위의 적정성

○ 건설업 모집단은 업체별 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기업규모가 큰 순서로 상위업체를 선정함

- 비확률표본이라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할 수는 없으나, 연간조사보다 분류수준이 더 통합되어 있고 표본의 대표도가 모집단의 54%, 50%를 포괄하고 있어 현재 공표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주요 통계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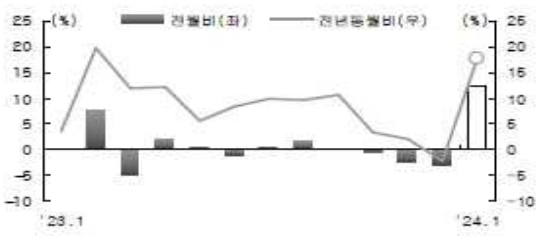
□ (건설기성)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

* 주거용에서 공사실적 증가 ** 플랜트에서 공사실적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15.9%) 및 토목(23.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17.6% 증가

(%)

	건설기성(불변)	
	전월비	전년동월비
'23. 1	0.1	3.5
'23. 10	-0.5	3.4
11	-2.4	2.2
12P	-2.9	-2.2
'24. 1P	12.4	17.6



건설기성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15.9%) 및 토목(23.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17.6% 증가

(%)

		'22년	'23년P	4/4P	1월	11월	12월P	'24.1월P
불변	전 월(기) 비	–	–	-2.2	0.1	-2.4	-2.9	12.4
	- 건 축	–	–	-3.1	1.1	-1.6	-3.6	12.3
	- 토 목	–	–	0.5	-3.1	-4.9	-0.4	12.8
	동 월(기) 비	2.8	7.4	0.9	3.5	2.2	-2.2	17.6
	- 건 축	4.2	9.5	1.1	6.7	3.8	-3.1	15.9
	- 토 목	-1.2	1.0	0.3	-6.9	-2.8	-0.4	23.7
경상	전 월(기) 비	–	–	-1.0	0.1	-2.8	-1.7	11.0
	동 월(기) 비	12.4	10.6	3.1	9.3	4.4	-0.1	19.5

건설수주

□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47.7%), 기계설치 등 토목(-60.0%)에서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53.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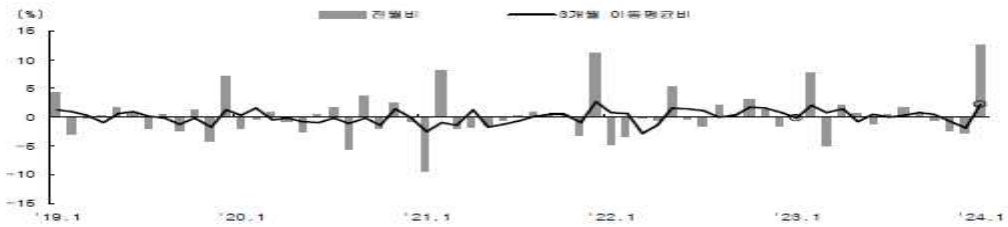
○ 발주자별로는 공기업 등 공공(29.7%)에서 증가했으나, 석유·화학 등 민간(-62.4%) 및 민자(-63.6%)에서 감소

(전년동월(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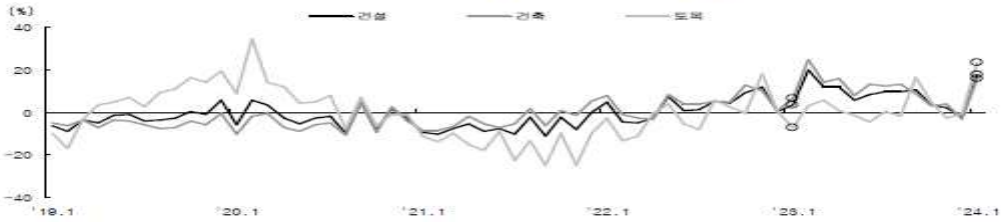
		'22년	'23년P	4/4P	1월	11월	12월P	'24.1월P
건 설 수 주[1]		10.0	-18.5	22.9	13.1	-19.6	43.0	-53.6
공종별	- 건 축	8.7	-30.3	8.3	-29.2	-17.3	2.8	-47.7
	· 주 택	8.3	-30.5	2.6	-38.1	-10.9	-7.8	-32.1
	- 토 목	14.6	22.7	58.6	214.9	-27.0	129.2	-60.0
	· 기계설치	61.1	-2.3	-26.7	845.7	-45.0	-24.0	-85.8
발주자	- 공 공	7.1	21.2	88.6	-24.4	17.7	139.1	29.7
	- 민 간	10.7	-28.7	0.4	20.5	-27.0	-4.1	-62.4
	- 민 자	-7.5	124.0	-0.6	-48.0	85.5	-82.8	-63.6

1) 합계에는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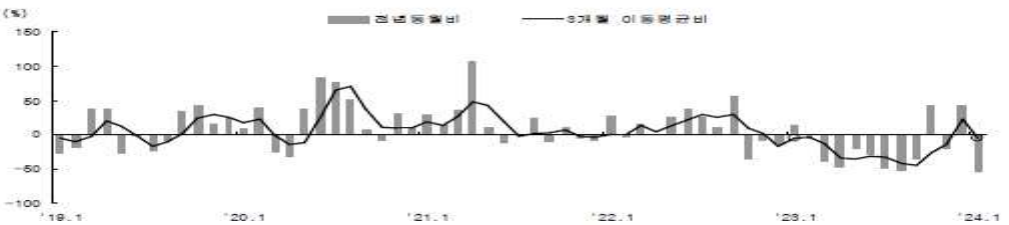
< 건설기성(불변, 전월비) 추이 >



<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전년동월비) 추이 >



< 건설수주(전년동월비) 추이 >



②-2 건설투자(불변, 계절조정) (십억원, %)

	건설기성	공종별		전 월(기) 비	공종별	
		건 축	토 목		건 축	토 목
2021	-	-	-	-	-	-
2022	-	-	-	-	-	-
2023p	-	-	-	-	-	-
2021.1/4	28,546	20,647	7,898	-4.9	-3.8	-7.6
2/4	28,026	20,600	7,425	-1.8	-0.2	-6.0
3/4	27,990	20,868	7,121	-0.1	1.3	-4.1
4/4	28,628	21,521	7,107	2.3	3.1	-0.2
2022.1/4	28,206	20,990	7,216	-1.5	-2.5	1.5
2/4	28,631	21,261	7,370	1.5	1.3	2.1
3/4	29,047	21,873	7,175	1.5	2.9	-2.7
4/4	30,286	22,903	7,383	4.3	4.7	2.9
2023.1/4	31,135	23,939	7,196	2.8	4.5	-2.5
2/4	31,478	24,146	7,332	1.1	0.9	1.9
3/4	31,833	24,313	7,520	1.1	0.7	2.6
4/4p	31,126	23,570	7,556	-2.2	-3.1	0.5
2022. 1	9,629	7,141	2,488	-4.8	-6.6	0.5
2	9,291	6,931	2,360	-3.5	-2.9	-5.2
3	9,286	6,918	2,368	-0.1	-0.2	0.3
4	9,220	6,779	2,442	-0.7	-2.0	3.1
5	9,720	7,276	2,443	5.4	7.3	0.1
6	9,691	7,206	2,485	-0.3	-1.0	1.7
7	9,541	7,246	2,294	-1.6	0.6	-7.7
8	9,730	7,221	2,509	2.0	-0.3	9.3
9	9,777	7,405	2,372	0.5	2.5	-5.5
10	10,068	7,651	2,416	3.0	3.3	1.9
11	10,187	7,642	2,546	1.2	-0.1	5.3
12	10,031	7,610	2,421	-1.5	-0.4	-4.9
2023. 1	10,042	7,696	2,346	0.1	1.1	-3.1
2	10,818	8,441	2,377	7.7	9.7	1.3
3	10,275	7,802	2,473	-5.0	-7.6	4.0
4	10,486	7,984	2,502	2.1	2.3	1.2
5	10,560	8,075	2,486	0.7	1.1	-0.7
6	10,431	8,087	2,344	-1.2	0.2	-5.7
7	10,487	8,159	2,328	0.5	0.9	-0.7
8	10,651	8,182	2,469	1.6	0.3	6.1
9	10,695	7,972	2,723	0.4	-2.6	10.3
10	10,646	8,038	2,608	-0.5	0.8	-4.2
11	10,389	7,910	2,479	-2.4	-1.6	-4.9
12p	10,091	7,622	2,470	-2.9	-3.6	-0.4
2024. 1p	11,346	8,561	2,785	12.4	12.3	12.8

※ p는 잠정치임

②-4 건설투자(경상,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

	건설기성	공종별		발주자별		건설수주	공종별		발주자별	
		건축	토목	공공	민간		건축	토목	공공	민간
2021	2.0	5.4	-6.6	4.9	1.7	9.2	7.4	16.4	-3.6	13.2
2022	12.4	13.7	8.7	2.7	15.6	10.0	8.7	14.6	7.1	10.7
2023p	10.6	12.8	4.1	0.6	13.3	-18.5	-30.3	22.7	21.2	-28.7
2021.1/4	-5.0	-4.1	-7.4	-2.3	-6.0	26.5	31.0	9.2	2.3	29.4
2/4	0.8	3.3	-5.6	6.7	-0.8	18.7	14.4	40.9	23.7	17.9
3/4	2.3	7.4	-11.4	4.4	2.9	3.7	5.3	-2.8	4.4	4.5
4/4	9.1	14.4	-3.0	9.2	10.2	-2.9	-9.4	19.5	-18.8	6.3
2022.1/4	10.1	13.3	1.9	7.0	11.9	13.4	8.4	36.0	19.8	14.0
2/4	13.2	14.3	10.3	1.3	17.1	21.4	20.6	24.8	-5.0	27.2
3/4	12.3	13.3	9.2	-0.9	15.9	30.2	28.2	39.3	47.8	26.1
4/4	13.5	14.0	12.3	3.4	17.0	-17.2	-18.6	-13.6	-9.6	-20.2
2023.1/4	17.4	20.9	7.0	4.4	21.0	-12.7	-24.8	31.1	-23.5	-11.1
2/4	11.5	15.2	0.7	-0.8	15.0	-31.4	-43.5	17.9	28.1	-44.1
3/4	12.8	14.3	8.0	7.7	14.1	-44.8	-50.0	-24.2	-42.1	-48.1
4/4p	3.1	3.4	2.4	-5.9	5.3	22.9	8.3	58.6	88.6	0.4
2022. 1	18.0	20.9	9.5	20.2	18.3	26.4	27.4	21.9	32.4	25.1
2	7.3	10.9	-2.8	2.1	9.5	-3.5	-13.1	53.1	-13.9	-1.5
3	6.3	8.9	-0.1	2.3	8.5	15.7	10.3	36.6	42.4	16.2
4	8.9	7.9	11.8	3.3	10.8	1.2	6.2	-19.0	-13.7	2.6
5	19.4	20.5	16.2	12.1	22.6	25.9	27.9	18.8	-33.5	43.5
6	11.7	14.5	5.1	-7.0	17.9	37.4	28.2	86.6	44.4	39.1
7	10.9	13.9	1.1	-5.5	16.0	25.7	40.7	-10.6	13.9	24.2
8	13.8	13.4	14.9	4.8	16.4	11.6	2.8	77.7	60.6	4.8
9	12.2	12.5	11.3	-1.9	15.4	56.1	47.2	104.4	72.6	52.5
10	16.8	20.0	7.0	8.3	19.6	-35.4	-43.7	-2.4	-10.2	-40.8
11	19.5	17.2	26.9	13.0	21.6	-8.7	-3.2	-22.6	-3.8	-11.0
12	6.9	6.7	7.4	-3.9	11.3	-12.2	-12.0	-12.6	-11.3	-12.8
2023. 1	9.3	12.4	-1.0	-10.3	13.7	13.1	-29.2	214.9	-24.4	20.5
2	26.4	31.8	9.4	14.7	29.8	-4.4	1.6	-24.5	-3.9	-3.5
3	17.4	19.7	11.3	8.2	20.6	-39.6	-37.1	-47.4	-34.4	-42.6
4	16.0	19.8	4.6	1.4	19.9	-46.8	-52.8	-16.0	8.9	-55.2
5	8.2	10.4	1.1	-3.6	11.2	-19.9	-39.3	52.2	49.2	-35.2
6	10.6	15.8	-2.7	-0.2	14.2	-29.0	-39.7	10.4	26.9	-43.0
7	12.1	14.7	2.6	-3.8	15.2	-48.4	-52.6	-32.3	-15.5	-52.0
8	12.5	16.2	0.7	3.2	14.5	-52.7	-54.2	-46.6	-39.6	-55.7
9	13.8	12.0	19.9	22.4	12.5	-35.3	-44.3	-0.6	-63.6	-38.9
10	6.1	5.6	7.6	-9.2	8.5	42.3	65.1	-10.0	-1.0	55.0
11	4.4	6.1	-1.0	-7.8	7.0	-19.6	-17.3	-27.0	17.7	-27.0
12p	-0.1	-1.0	1.7	-2.9	1.0	43.0	2.8	129.2	139.1	-4.1
2024. 1p	19.5	17.9	25.6	8.9	21.6	-53.6	-47.7	-60.0	29.7	-62.4

※ p는 잠정치임

□ 통계해석방법

< 건설수주 >

○ 조사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건설업』에서 국내공사에 한정
○ 조사대상: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중에서 전전년「건설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표도가 54%가 되도록 기성액 순위 상위 기업체를 선정
○ 조사내용: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

✪ 이용 시 참고사항
- 계절조정계열: 전월비, 전분기비 등 단기 분석시 이용
 · 경상금액을 X-13ARIMA-SEATS 방식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
- 2010년 공종분류 건축, 토목, 전문공사를 건축과 토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과거계열 보정함

< 건설기성 >

○ 조사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 가운데 국내공사에 한정
○ 조사대상: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전전년 「건설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표도가 50%가 되도록 기성액 순위 상위 기업체를 선정
○ 조사내용: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

✪ 이용 시 참고사항
- 계절조정계열: 전월비, 전분기비 등 단기 분석시 이용
 · X-13ARIMA-SEATS 방식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
- 2010년 공종분류 건축, 토목, 기타를 건축과 토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과거계열 보정함
- 2010년 2월부터 공종별 건설기성액 불변 및 계절조정계열자료 작성 및 공표

□ 이용시 유의사항(일러두기)

○ 건설수주 이용시 유의사항

- 매월 발표되는 통계수치는 잠정치로서 2개월 후에 확정치로 수정됨
- 각 년도의 조사결과는 매년 연간보정작업(「건설업조사」 공표에 따른 대표도 보정 및 조사착오사항 정정 등)을 거쳐 2년 후 최종 확정(2025년 조사결과는 2027년 1월분 공표시 최종 확정됨)
- 계절조정 계열 : 전월비, 전분기비 등 단기분석시 이용
 · 경상금액에 X-13ARIMA-SEATS 방식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
 · 매년초(2월경) 전년도 시계열을 반영한 계절조정 작업으로 과거의 계절조정자료가 수정됨

○ 건설기성 이용시 유의사항

- 매월 발표되는 통계수치는 잠정치로서 2개월 후에 확정치로 수정됨
- 각 년도의 조사결과는 매년 연간보정작업(「건설업조사」 공표에 따른 대표도 보정 및 조사착오사항 정정 등)을 거쳐 2년 후 최종 확정(2025년 조사결과는 2027년 1월분 공표시 최종 확정됨)
- 계절조정 계열: 전월비, 전분기비 등 단기분석시 이용
 · 경상금액에 X-13ARIMA-SEATS 방식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
 · 공종 및 발주자분류의 하위분류는 직접법을 적용하였으며, 총액은 공종분류의 간접법 적용하였으므로 발주자분류의 하위합은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
 · 매년초(2월경) 전년도 시계열을 반영한 계절조정작업으로 과거의 계절조정자료가 수정됨
- 불변건설기성액 및 불변(계절조정)건설기성액: 2010.2월부터 작성 및 공표
 · 최근 2개월 수치가 잠정임(2018년 2월부터)
 · 건설기성디플레이터 개편시 과거 시계열자료가 변경됨(2025.2월에 2015년=100에서 2020년=100으로 개편됨)

□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매년 1월분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공표 시 '일러두기'에서 연간보정 및 계절조정, 디플레이터 갱신 등 실시로 시계열 변경 시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시계열 변경 등 유의사항을 KOSIS 팝업 게시하여 안내

- 2025.1.: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 개편(2020=100)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신 불변금액작성, 연간보정 및 계절조정

일 러 두 기

□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수록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동향 :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광공업생산 및 출하지수, 제조업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재고액지수

○ 소비동향 : 소매판매액지수

○ 투자동향 : 설비투자지수, 국내기계수주액,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

○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생산확산지수

□ 단기의 경기변동 동향분석(전월(기)비) 파악을 위해서는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였고, 성장수준을 분석(전년동월(기)비)하기 위한 경우는 원계열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계열에는 설, 추석 명절의 월간이동 및 파업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고, 계절조정계열에도 불규칙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지표와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과거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 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 가중치 갱신, 대표도 보완 등을 위한 연간보정과 계절성 제거를 위한 계절조정 실시로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이 보정되었음

○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2~3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록된 지표(산업분류) 명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시기

○ 조사기준시점: 매월 말일

○ 조사대상기간: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 조사실시기간

- 건설수주: 익월 1일 ~ 18일까지
- 건설기성: 익월 1일 ~ 22일까지

○ 공표시기: 익월 말일경

- 최근 2개월 자료는 잠정치로, 해당월에 p로 표기함

□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시간

○ 조사실시 및 자료 입력: 약 18 ~ 22일

○ 자료 내검 및 통계표 작성: 약 3 ~ 5일

○ 자료 분석 및 보도자료 작성: 약 2 ~ 3일

○ 보도자료 인쇄: 약 1일

□ 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

○ 조사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이고 통계공표 시점은 익월 30일 경이므로 약 한달간의 시점 차이가 있음

□ 통계작성 및 공표 기간 단축 가능성

○ 조사대상처의 자료집계시간,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수집·분석·검토·보고공표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함

3. 공표일정

□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통계공표 일정은 매년 초에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연간일정을 공개

- 홈페이지 주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0/index.action?bmode=list

□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예고

○ 통계공표 일정은 매년 초에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연간일정을 공개

- 홈페이지 주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0/index.action?bmode=list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4. 1. 31.(수)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4. 3. 4.(월)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 3. 29.(금)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24. 4. 30.(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 5. 31.(금)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 6. 28.(금)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	2024. 7. 31.(수)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4. 8. 30.(금)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4. 9. 30.(월)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2024. 10. 31.(목)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4. 11. 29.(금)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4. 12. 30.(월)

※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게재 하겠습니다.

○ 또한, 매월 보도자료 부록에 일정을 수록하고 있음.

□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공개된 공표일정 (2024.3.4.)과 실제 공표시기 (2024.3.4.)가 일치하여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을 준수하고 있음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개념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분류체계 동일 여부

○ 공종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 후 변경이력 있음

- (2005. 8월) 주택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주택
- (2009. 1월) 토지조성 및 공원 → 토지조성, 조경공사
- (2010. 2월) 건축, 토목, 전문공사 → 건축, 토목

· 변경전·후 비교분석: 통합대상인 전문공사의 비중이 낮아서 구성비 변화가 거의 없음

○ 발주자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 후 변경이력 있음

- (2009. 1월) 발주자분류 통합(외국기업체를 민간으로 통합)

□ 기준시점 변경여부

○ 건설기성 불변화를 위한 건설기성디플레이터의 기준년도 변경

- (2013. 2월) 2005년=100 → 2010년=100
- (2020. 2월) 2010년=100 → 2015년=100
- (2025. 2월) 2015년=100 → 2020년=100

□ 조사 실시 시기 변경여부

○ 변경된 적 없음

□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

○ 건설기성디플레이터의 기준년도 변경시 과거자료를 접속으로 처리

○ 분류체계 변경시 과거 자료까지 소급하여 보정

5.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과 변경된 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

○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 시계열 변경 유의사항을 kosis 팝업 게시하여 안내

○ 지수접속

- 2020년 이전 자료의 경우 접속계수(단순비례법 적용)를 이용하여 접속
 · 기준년 기준 과거시계열 = 기준년직전 기준 시계열 × 접속계수
 · 접속계수 = 100 ÷ (직전 기준연도 기준에 의한 당해 기준연도의 연평균 지수)

6. 국가간 비교성

□ 외국 통계 명칭 및 개요 비교

○ 조사방법(조사/행정), 포괄범위 등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를 이용한 비교 가능

구분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캐나다	호 주
작성기관 (영문)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Statistics)	센서스국 (U.S. Census Bureau)	통계청 (ONS)	국토교통성 (MLIT)	통계청 (Statistics Canada)	통계청 (ABS)
작성주기		월	월	수주: 분기 기성: 월	월	월	분기
공표주기		월	월	수주: 분기 기성: 월	월	월	분기
공표시기		익월 말일	익익월 1일	수주: 익익월 10일경 기성: 익익월 10일경	익익월 10일경	익익월 22일경	익익월 27일경
공표내용	경상자료	○(금액)	○(금액)	수주: ○(금액) 기성: ○(금액, 지수)	○(금액)	○(금액)	○(금액)
	계절조정자료	○(금액)	○(금액)	수주: ○(금액, 지수) 기성: ○(금액, 지수)	X	○(금액)	○(금액)
	전월비	○	○	○	X	○	○
	전년동월비	○	○	○	○	○	○
주요 공표항목		- 건설수주액 - 대규모공사 건설수주액 - 건설기성액	- 건설기성액	- 건설수주액(지수) - 건설기성액(지수)	- 건설수주액 - 50대기업 건설수주액	- 건설투자액	- 건설기성액

□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와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 외국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통계선진국들은 조사방법(조사/행정), 포괄범위 등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를 이용한 비교 가능하지만,

- 국가별로 조사방식,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 기구 자료 제공

○ OECD 단기경제지표 작성을 위해 “건설수주액(합계)” 항목을 제공함

- 1999.1월분부터 최신 공표자료까지를 SDMX(국제자료교환 표준) 방식으로 제공함

: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한 URL을 통해 OECD 측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료 이용

* URL(https://stat.kosis.kr/kodaps/ws/rest/compact/OECD,STES,1.0/all?reqNo=STES_KOR)

7. 유사통계와 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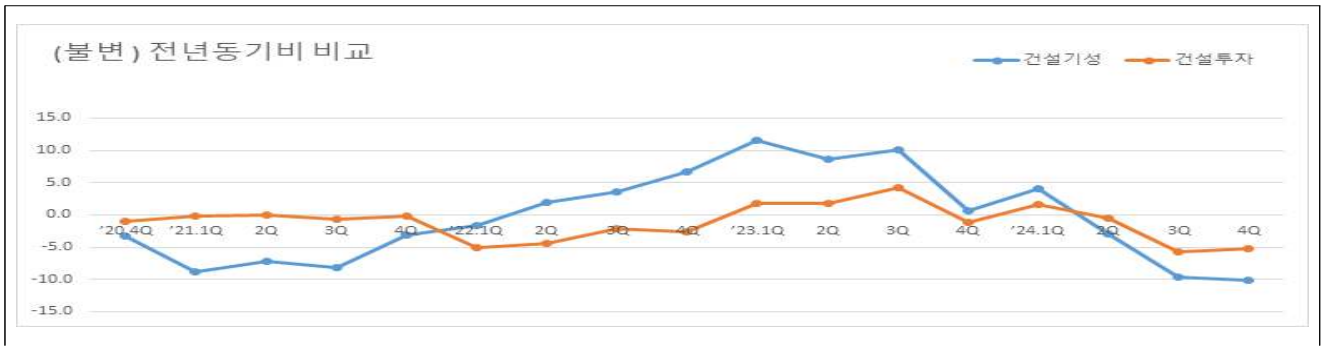
7-1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건설기성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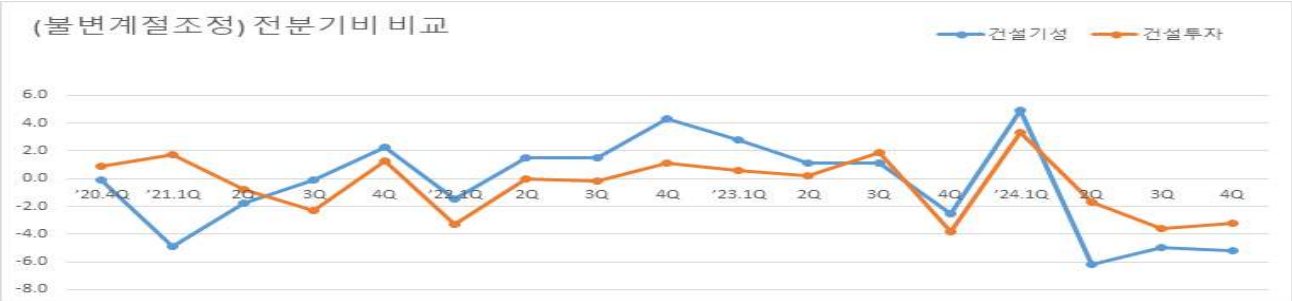
○ 포괄범위(표본/전수) 및 측정개념(부대비용 및 건물 재고증감 포함여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다소간 차이 발생 가능

	건설경기동향조사 (기성)	국민계정 (건설투자)
작성형태	조사통계	가공통계
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작성주기	월	분기
포괄범위	표본조사(상위 50% 일반건설업체)	전수추계(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측정개념	건설기성액 = 산출액 + 매출VAT	건설투자액 = 산출액(건축보수 등 제외) + 부대비용(취·등록세 등) + 영림(육성자산) - 재고증감
계절조정	간접법 (대분류)	직접법

○ 전년동분기비 및 전분기비 비교



동분기비		'20.4Q	'21.1Q	2Q	3Q	4Q	'22.1Q	2Q	3Q	4Q	'23.1Q	2Q	3Q	4Q	'24.1Q	2Q	3Q	4Q
증감률 (%)	건설기성	-3.2	-8.8	-7.2	-8.1	-3.1	-1.7	1.9	3.6	6.7	11.5	8.7	10.1	0.6	4.1	-3.0	-9.6	-10.1
	건설투자	-1.0	-0.2	0.0	-0.6	-0.2	-5.0	-4.5	-2.1	-2.6	1.7	1.7	4.3	-1.2	1.6	-0.5	-5.7	-5.3



전분기비		'20.4Q	'21.1Q	2Q	3Q	4Q	'22.1Q	2Q	3Q	4Q	'23.1Q	2Q	3Q	4Q	'24.1Q	2Q	3Q	4Q
증감률 (%)	건설기성	-0.1	-4.9	-1.8	-0.1	2.3	-1.5	1.5	1.5	4.3	2.8	1.1	1.1	-2.5	4.9	-6.2	-5.0	-5.2
	건설투자	0.9	1.7	-0.8	-2.3	1.3	-3.3	0.0	-0.2	1.1	0.6	0.2	1.9	-3.8	3.3	-1.7	-3.6	-3.2

7-2 공표항목과 타통계 유사·동일 항목간 통계 수치 비교·검토

□ 건설기성·건설투자·GDP건설투자 · GDP 건설업 비교

	국가데이터처 건설수주액(월별)	국가데이터처 건설기성액(월별)	국민계정 건설투자(분기)	국민계정 건설업(분기)
작성목적	국내 건설경기동향을 **조기**에 파악	국내 건설활동의 단기 투자동향 파악 (대규모 업체 동향 위주)	향후 생산활동을 높이기 위한 **건설 고정자산의 투자동향** 파악	건설업에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 포착**(생산측면)
추계방법	조사대상(대표도 54%) 기업체의 국내수주액 집계	조사대상(대표도 50%) 기업체의 국내공사 기성액(하도급 제외) 집계	건설업산출액(건축보수 등 제외) + 영림(육성자산) + 부대비용(취·등록세, 소유권 이전비용 등) + 재고증감	산출액 - 중간투입
기초자료	국내 종합건설업체 (대표도 54%)	국내 종합 건설업체 (대표도 50%)	건설업조사(건설경기동향), 국토해양부 착공실적, 부동산 거래현황, 산업연관표 등	건설업조사(건설경기동향), 국토해양부 착공실적, 정부세출자료, 산업연관표 등
공표주기	월	월	분기	분기
공표계열	1976년 1월 이후 경상(원계열, SA)	1997년 7월 이후 경상(원계열, SA)	1970년 1/4분기 이후 경상(원계열,	1970년 1/4분기 이후 경상(원계열,

		불변(원계열, SA)	SA) 불변(원계열, SA)	SA) 불변(원계열, SA)
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비고	중소 건설업체 흐름이 미반영 가능성이 있음	중소 건설업체 흐름이 미반영 가능성이 있음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3개의 분류 공표함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보수, 토목 4개의 분류 공표

□ 기타 유사통계 작성 현황

	건축허가·착공면적	건설경기실사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목적	향후 건축부문 공사 동향을 조기에 파악	건설산업에 대한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	건설공사 공사비 변동 파악 (물가 및 시장동향)
추계방법	구시군 → 시도 → 국토교통부 (행정통계)	종합건설업체 대상 조사	IOT투입구조 및 PPI 변동을 가중평균
기초자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착공대상	패널업체 조사(매출액에 따라 구분)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주기	월	월	월
공표계열	1962년 1월 이후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작성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비고			

8.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간 차이

○ 차이 원인

- 건설경기동향조사는 신속한 동향통계 제공을 위해 매 익월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기업체별 자료 집계시기 등에 따라 최근 2개월 자료에 잠정치가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매년 대표도보정 및 변경계약 등 확정자료 반영에 따른 연간보정으로 각 년도의 조사결과는 2년후 최종 확정됨(2025년 통계는 2027년 1월분 공표시 최종 확정)

□ 이용시 유의사항

○ 보도자료, KOSIS 공표자료, 월보에 최근 2개월 자료에 잠정값이 포함되어 있고 추후 수정될 수 있음을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통계표에서 해당 월에 p를 표시함

□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

○ 잠·확정 차이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건설수주는 행정자료를 참고하여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확인
- 건설기성은 자료집계지연 등으로 부득이 확정자료 입력이 불가할 경우, 과거의 월별 변동추이(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변동), 최근 수주동향 및 공사현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치를 입력

○ 건설기성 불변금액 잠·확정 차이(%p) 현황

조사기준연월	2차 - 1차 차이		3차(확정) - 2차 차이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2024. 1월	1.4	0.6	-1.1	-1.2
2월	0.9	-0.1	0.3	0.3
3월	-1.5	-1.3	0.0	-0.1
4월	-0.8	-0.9	0.7	0.7
5월	0.2	0.8	-0.2	-0.2
6월	-0.5	-0.7	-0.7	-0.7
7월	1.0	0.1	0.4	0.3
8월	-0.7	-0.2	-0.3	-0.4
9월	-0.6	-0.8	-1.3	-1.1
10월	-0.1	-1.1	1.0	0.9
11월	-0.7	0.4	-2.2	0.2

○ 기업체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를 매월 비교 분석하여, 세부 증감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9.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공표 방법

○ 브리핑: 기획재정부 출입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설명회(브리핑실)

○ 보도자료: 산업활동동향

- 경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산업활동
- 링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5/1/index.board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자료유형	자료명	제공경로 유형	제공경로(링크)
브리핑	산업활동동향	e-브리핑	http://ebrief.korea.kr
		홈페이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 새소식 > e-브리핑 http://ebrief.korea.kr/briefing/statisticsBriefing.do
보도자료	산업활동동향	우편배포	통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홈페이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산

			업활동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5/1/index.board
보고서 간행물	건설경기동향	우편배포	통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온라인간행물	KOSIS > 온라인간행물 > 전체 > 건설경기동향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통계표 DB	건설경기 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건설·주택·토지 > 건설 > 건설경기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

○ 통계서비스 이용자의 접속횟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클릭(Click)한 조회수로 파악 가능

- kosis 이용자 접속횟수

이용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속횟수	65,088	54,217	57,246	76,552	91,476	98,840	126,849	167,719	204,474	192,675	211,338

10. 통계 이용자 활용

□ 통계활용 분야(정책, 학술, 언론)별 이용자 통계활용 현황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함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함(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함(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함

-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격월 단위로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이슈 발표함

 ** 매년 10월경 다음연도 및 중기 경제전망 발표함

○ (연구기관*) 투자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기타) 국가데이터처의 경기종합지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각종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11.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설명자료조회

12.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생성·관리하고 있음

○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 데이터를 나라통계시스템 서버에 DB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다만,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이용(Public Use) 및 승인된(Licensed) 마이크로데이터용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지 않음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생성된 마이크로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과에서 관리ㆍ보관함

- 자료제공부서에서는 자료생산부서에서 이관 받은 조사자료, 코드북, 파일설계서 등을 토대로 확정된 자료제공범위의 자료를 추출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작성기관의 통계전용서버에 저장하여 담당자 외에는 접근 제한

1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미제공 사유

○ 매월 자료의 변동 발생

- 잠정자료 및 연간보정에 의해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신속한 동향자료 제공에 따라 최근 2개월 자료에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고, 매년 연간보정으로 변경계약 및 확정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연간보정이 최종 완료된 이후에 제공하게 되면 시의성이 떨어짐
 : 연간보정이 최근 2개년에 이루어지므로, 2025년 조사결과는 2027년 1월분 공표시에 최종 확정됨

○ 특정업체 식별 가능성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대상은 건설수주 1,573개, 건설기성 827개로 건설수주액 또는 건설기성액만으로 특성 업체의 추정이 가능하여 기업체 노출 위험
 ㆍ 자료를 세부적(공종, 발주자 등)으로 구분하면 기업체 노출위험 증가

14.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자료의 수집, 입력 등을 담당하는 조사담당자(공무원, 공무직)를 대상으로 업무상 취급

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교육

○ 통계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및 보안을 유지

□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에 의거 보존용 자료의 비밀을 보호

□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 자료처리가 완료되면 내부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며 개인별 ID를 부여하여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 또한 조사담당자의 경우 응답자료를 캐비닛에 철저히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잘 시건하여 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요청함

15.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방법

○ 개별기업체의 정보가 인지되지 않도록 집계결과 공표

16.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유실, 유출, 훼손 등 관련 규정

○ [국가데이터처 예규]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 제8조(보존용 자료의 복제)
- 제9조(보존용 자료의 소산)
- 제15조(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
- 제16조(자료의 유출방지)
- 제17조(자료보관실의 보안)

□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산업동향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보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 공표 전 작성자료에 대한 DB는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 공표 전 자료작성 기간에는 관계자외 산업동향과 사무실 접근 금지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부서 및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국가데이터처 산업동향과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	인원수	통계업무 경력	구체적인 통계업무	최근 1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련 교육이수 내역
과장	1명	-	산업활동동향 총괄	
5급	1명	-	기획·분석·결과공표	경제학과 전공
6급	1명	28년	기획·분석·자료처리·결과분석	계절조정실무 등
공무직	1명	13년	내용검토, 자료입력	계절조정실무 등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및 개선 추진실적

○ (2019. 6.) 수주행정자료 시스템 개발

- 업무절차 효율화 및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매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의 감소

○ (2019.10.) 건설경기동향조사 지침서 개정·발간

- 용어·지침 정비, 사례추가, 시스템 이용방법 개정, 참고자료수록 등 평소 문의 및 착오가 빈번한 부분에 대해 중점 보완하여 조사원 교육 강화

○ (2020. 2.) 건설기성디플레이터를 2015년=100 기준으로 개편

- 산업연관표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2015년 기준 개편에 따라 현실반영도 제고하고, 타 경제 관련 지표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비고·활용성 제고

○ (2024.7.) 건설경기동향조사 지침서 개정·발간

- 공종별 분류 및 발주자별 분류 정비, 시스템 이용방법 개정, 참고자료수록 등 현행화 하여 조사원 교육 강화

○ (2025. 2.) 건설기성디플레이터를 2020년=100 기준으로 개편

- 산업연관표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2020년 기준 개편에 따라 현실반영도 제고하고, 타 경제 관련 지표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비고·활용성 제고

□ 최근 3년간 통계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에 대한 외부 지적사례는 없음

□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관리 및 이행내역

